

세법연구 08-09

# 주요국의 유류세 제도 및 세율 비교 분석

2008. 12

조명환 · 조진권 · 정경화

세 법 연 구 센 터

 한국조세연구원

# 목 차

I. 서론	9
II. 우리나라의 유류세 제도 및 세율	11
1. 개요	11
2. 유류세 관련 현황	13
III. 주요국의 유류세 제도 및 세율	16
1. 미국	16
2. 일본	21
3. 독일	23
4. 이탈리아	25
5. 중국	27
6. 덴마크	29
7. 노르웨이	31
8. 스위스	33
9. 오스트리아	36
10. 포르투갈	37
11. 프랑스	39
12. 영국	41
13. 캐나다	43
14. 뉴질랜드	47
15. 스웨덴	49
16. 핀란드	54
17. 아일랜드	56

18. 네덜란드	58
19. 헝가리	60
20. 슬로바키아	62
IV. 국제비교	64
1. 최종가격 대비 유류세 비중	64
2. 유류세율 비교	66
3. 국가별 유류세 구성세목 비교	69
V. 결 론	71
참고문헌	73

## 표 목 차

〈표 1〉 유류세 등 관련 조세항목과 세부담 수준(2009년 1월).....	13
〈표 2〉 유류세 등 관련 조세항목과 세부담 수준.....	14
〈표 3〉 우리나라의 유류 가격과 세부담(2008년 12월).....	15
〈표 4〉 미국의 연방 유류세(2008년 7월 기준).....	17
〈표 5〉 유류세 등 관련 조세항목과 세부담 수준.....	18
〈표 6〉 미국의 주별 유류세(2008년 1월 기준).....	19
〈표 7〉 미국의 평균 가격과 유류세.....	20
〈표 8〉 일본의 유류세(2008년 3월 기준).....	22
〈표 9〉 일본의 평균 가격과 유류세.....	22
〈표 10〉 독일의 친환경 연료 법적 함유량(2007년~2015년).....	23
〈표 11〉 독일의 유류세(2007년 1월 기준).....	24
〈표 12〉 독일의 평균 가격과 유류세.....	24
〈표 13〉 이탈리아의 유류세(2008년 9월 기준).....	25
〈표 14〉 이탈리아의 평균 가격과 유류세.....	26
〈표 15〉 중국의 유류세(2007년 10월 기준).....	28
〈표 16〉 중국의 자원세(2007년 10월 기준).....	28
〈표 17〉 덴마크의 유류세(2008년 9월 기준).....	30
〈표 18〉 덴마크의 평균 가격과 유류세.....	31
〈표 19〉 노르웨이의 유류세(2008년 9월 기준).....	32
〈표 20〉 노르웨이의 평균 가격과 유류세.....	33
〈표 21〉 스위스의 유류세(2008년 9월 기준).....	35
〈표 22〉 스위스의 평균 가격과 유류세.....	35
〈표 23〉 오스트리아의 유류세(2008년 9월 기준).....	36

〈표 24〉 오스트리아의 평균 가격과 유류세	37
〈표 25〉 포르투갈의 유류세(2008년 9월 기준)	38
〈표 26〉 포르투갈 평균 가격과 유류세	39
〈표 27〉 프랑스의 에너지별 평균가격과 유류세	40
〈표 28〉 영국의 기후 변화세(Climat Change levy)	42
〈표 29〉 영국의 에너지원별 유류세 부과 현황	42
〈표 30〉 캐나다의 에너지원별 유류세 부과 현황(Ontario 주)	44
〈표 31〉 캐나다의 각 주별 지방세 부과 현황	45
〈표 32〉 캐나다의 British Columbia주 탄소세 부과 현황	46
〈표 33〉 뉴질랜드의 에너지원별 유류세 부과 현황	49
〈표 34〉 스웨덴의 휘발유 환경기준 분류	51
〈표 35〉 스웨덴의 경유 환경기준 분류	52
〈표 36〉 스웨덴의 에너지원별 에너지세 · 이산화탄소세	52
〈표 37〉 스웨덴의 에너지별 평균가격과 유류세	54
〈표 38〉 핀란드의 에너지원별 유류세 부과 현황	55
〈표 39〉 아일랜드 에너지원별 유류세 부과 현황	57
〈표 40〉 네덜란드의 에너지원별 유류세 부과 현황	59
〈표 41〉 네덜란드의 천연가스(natural gas) 에너지세 부과 현황	59
〈표 42〉 헝가리의 에너지원별 유류세 부과 현황	61
〈표 43〉 슬로바키아의 에너지원별 유류세 부과 현황	63
〈표 44〉 OECD 국가의 무연휘발유 최종가격과 유류세 비중	64
〈표 45〉 OECD 국가의 Automotive Diesel 최종가격과 유류세 비중	65
〈표 46〉 OECD 국가의 경유(Light Fuel Oil) 최종가격과 유류세 비중	66
〈표 47〉 에너지원별 유류세 비교(가정용)	66
〈표 48〉 에너지원별 유류세 비교(산업용)	68
〈표 49〉 국가별 유류세 구성세목 비교	69

## 그림목차

[그림 1] 뉴질랜드의 휘발유 가격 분석(2007. 12).....	48
---------------------------------------	----

## I. 서론

- 근래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자원의 소비와 낭비로 인한 폐해로 지구온난화효과(Greenhouse Effect)로 일컬어지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음.
  - 탄소배출을 막기 위한 연구와 기술이 더 이상 과학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을 최소화 하려는 재정정책들이 이미 여러 국가에 도입되고 있는 실정임.
  - 에너지세(Energy tax)는 화석연료(fossil fuels)인 석탄, 석유와 천연가스, 전기의 사용에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소비세(excise tax)로 과세되고 있음.
    - 환경세(Environmental tax or Green tax)는 2005년부터 EU에서 도입되고 있는 탄소배출권시장거래제도(EU carbon emissions Trading System; ETS)와 더불어 대표적인 환경정책 수단임.
    - 에너지세로 부과·징수된 조세수입은 환경개선비용, 도로확충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
  
- 에너지조세는 환경오염이라는 부의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에너지 가격구조의 합리화, 산업구조의 변화, 최근 경기부양을 위한 각국의 재정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작지 않음.
  - Pigou의 후생경제학(The Economics of Welfare)에서는 ‘생산자가 자신이 발생시킨 오염과 환경파괴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과세가 필요함’을 주장
  -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와 같은 기후협약<sup>1)</sup>은 탄소배출 억제를 위한 국제노력

---

1) 1992년 38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에서 채택한 기후협약(Climate Change treaty)을 시작으로 1997년 교토의정서가 추가되었고, 2005년 2월 16일에 이르러서야 교토의정서에 법적구속력이 부여됨.

으로 장래 특정국가의 산업구조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중요 정책수단의 하나로 에너지조세가 활용되고 있음.

○ 세계화, 선진화된 금융기술, 자원의 무기화 등으로 불거진 에너지 가격의 왜곡현상으로 인한 경제주체의 부담을 줄이고자 에너지조세정책이 이용되기도 함.

- 2008년 7월 국제 휘발유 가격은 배럴당 147.8달러로 최고점을 경신하였지만, 2008년 12월 현재에는 30달러로 하락

- 우리나라의 경우 고유가파동으로 인한 서민생활 안전을 위해 2008년 10월에 유가 환급금을 정책을 발표

□ 에너지세는 종량세와 종가세가 혼합(mix)되어 있고 다른 세제보다 국제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이어서, 에너지소비국에게는 합리적인 에너지세제와 적시성 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많은 에너지 중 경제성장을 위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석유자원에 관련된 조세에 대한 관심이 많음.

○ 특히 유류세에 대한 국가 간 비교가 첨예한 화두로 전개되고 있지만, 세금 부담에 대한 국가 간 비교를 위해서 국민소득 수준, 국가 경제구조, 세목 간 구성 비율, 조세부담률, 외부성의 사회적 비용 등의 항목들에 대한 선행조사가 필요

○ 본 연구에서는 우선 OECD 회원국과 중국에 대한 에너지세 제도 중 유종별 과세대상과 세율에 대한 정책과 유류세 현황에 국한하여 조사를 수행

□ 본 보고서의 제Ⅱ장은 우리나라의 유류세 제도와 현황을, 제Ⅲ장은 OECD 회원국별 유류세에 대한 조세정책과 유류세 현황 등을 분석해보고, 제Ⅳ장에서 국제비교를 통해 제Ⅴ장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본 연구에 있어서 유류세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부분으로 구분하고자 함.

- 단, 최종가격 대비 유류세 부담수준을 파악함에 있어서 유류세는 유류세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

○ 국가별 다양한 유종별 과세기준, 화폐, 계량치 등의 통일화를 위해서 공신력 있는 기관(IEA, 또는 OECD)이 발간하는 보고서를 기준으로 국제비교를 수행

## II. 우리나라의 유류세 제도 및 세율

### 1. 개요

- 우리나라의 에너지세는 종량세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지방주행세와 부담금과 종가세인 부가가치세와 관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sup>2)</sup>.
  - 개별소비세에서 유류(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석유가스)와 천연가스 등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휘발유와 경유는 개별소비세법<sup>3)</sup>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sup>4)</sup>에서 중복하여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개별소비세에서는 과세되지 않고 사실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과세되고 있음<sup>5)</sup>.
  - 주행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부과되는 목적세로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방세임.
  -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액과 교통·에너지·환경세액에 부과되는 목적세이므로 유류와 천연가스에 부과됨.
  - 일반적으로 에너지세와 관련된 명목세율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

2) 이와 같은 조세 외에 준조세 성격의 유류에 부과되는 부담금은 석유및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수입 판매부담금과 안전관리부담금이 존재하며, 고급 유류에 대하여 증가하고 있음.

3)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2008.12.26 개정)  
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50원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91원

4)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제1항(2008년 9월 26일 개정)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475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40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탄력세율)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514원 (2008.10.7. 개정)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64원 (2008.10.7. 개정)

5)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 제9항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 교통에너지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 당해 개별소비세액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 가능

탄력세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임(교육세법 제외).

-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유류와 천연가스 등은 면세재화 또는 영세율 과세대상 품목으로 분류되고 있지 않으므로 10%로 과세되고 있음.
- 수입된 원유인 석유, 석유가스인 프로판과 부탄, 천연가스의 경우 3%의 관세가 부과됨<sup>6)</sup>.

□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특정산업에 사용되는 석유류와 경형자동차에 사용되는 자동차연료와 택시사업자에 대한 유류에 대하여 감면 또는 면제를 허용하고 있음.

-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으로 사용되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이하 면세유)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유류세(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는 2012년 6월 말까지 면제되고, 201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공급되는 면세유는 75% 감면<sup>7)</sup>
-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에게 공급한 석유가 면세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와 유류세는 신청에 의하여 환급 가능<sup>8)</sup>
-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와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한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와 유류세가 면제<sup>9)</sup>
- 석유제품<sup>10)</sup>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에 혼합되어 있는 바이오디젤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면제<sup>11)</sup>
- 경형자동차(輕型自動車)의 연료로 사용되는 유류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자동차소유주에게 환급되어 면제됨<sup>12)</sup>.

6) 관세율표 2710호 소호 00, 관세율표 2711호 소호 11~12, 2712호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8)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항

9)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제1항

1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 제5호 :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그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한 것

11)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제2항

- 환급세액은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석유 가스 중 부탄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전액임.

-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석유가스 중 부탄(2010년 4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한함)에 대하여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는 환급되어 면제됨<sup>13)</sup>.

## 2. 유류세 관련 현황

□ 현재 유류와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조세 항목과 세부담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표 1〉 유류세 등 관련 조세항목과 세부담 수준(2009년 1월)

구분		종량세					종가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합계	부가가치세	관세
석유류 (원/ℓ)	휘발유		514(475) <sup>1)</sup>	154	77	745	10%	3%
	경유(디젤)		364(340)	109	55	528	10%	3%
	등유	63(104)			9	72	10%	3%
	중유	17(20)			3	20	10%	3%
	부산물 유류	47(104)			7	54	10%	
석유가스 (원/kg)	프로판	14(20)			-	14	10%	3%
	부탄	275(290)			41	316	10%	3%
천연가스(원/kg)		42(60)			-	42	10%	3%

주: 1) 명목세율은 ( ) 안에 표기함.

자료: 이만우, 「우리나라 에너지 조세체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세무와 회계저널』 제8권 제3호, 한국세무학회, 2007년 p. 77 참조하여 2009년 1월 기준으로 재작성

12)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경형자동차란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의 자동차를 의미

13)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

- 종량세의 경우 명목세율이 아닌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탄력세율이 명목세율보다 낮아 세부담을 줄여주고 있지만 휘발유, 경유(디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탄력세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행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에 30%의 탄력세율(명목세율은 36%) 적용(지방세법 제196조의 17, 동법시행령 제146조의 14)
  - 교육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 프로판과 천연가스는 납세의무 없음(교육세법 제3조 제2호), 그 외의 개별소비세액의 15%를 부과(교육세법 제5조 제1항)
- 우리나라의 유류세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국세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2007년의 경우 유류세는 25조 4,809억원으로 국세(161조 4,591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8%에 해당<sup>14)</sup>
  -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는 유류세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는 종량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임<sup>15)</sup>.

〈표 2〉 유류세 등 관련 조세항목과 세부담 수준

(단위: 억원,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국 세	927,928	1,039,678	1,146,640	1,177,957	1,274,657	1,394,459
유류세	177,302	178,253	195,285	208,718	220,612	235,106
교통·에너지·환경세	105,349	94,775	100,005	100,652	102,878	108,126
특소세(유류)	10,691	16,848	22,355	26,587	25,289	22,989
주행세	5,420	10,634	12,658	17,503	22,925	27,095
교육세(유류)	17,406	16,743	18,354	19,086	19,225	19,667
부가세(유류)	38,436	39,253	41,913	44,890	50,295	57,229
비 중	18.5	17.1	17	17.7	17.3	16.9

자료: 이만우, 「우리나라 에너지 조세체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세무와 회계저널』 제8권 제3호, 한국세무학회, 2007 p. 79

14) 「동아일보」, 2008년 9월 10일자, 최장봉 기자

15) 이만우(2007), p. 79

□ 우리나라의 유류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08년 12월 현재 휘발유는 약 65.4%, 경유(디젤)는 47.7%를 차지하고 있음.

○ 종량세인 유류세와 종가세인 부가가치세를 합한 세부담액을 세후가격으로 나누어 산정

○ 2008년 3분기까지 유가상승이 지속되자 2008년 10월 7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휘발유는 462원, 경유는 328원을 인하하여 유류세 부담액은 670원과 476원이 됨.

〈표 3〉 우리나라의 유류 가격과 세부담(2008년 12월)

(단위: 원)

에너지원별	단위	세전 가격	유류세	부가세	세금 합계	세포함 가격
무연보통휘발유	(원/ℓ )	412.61	670.2	108.25	778.15	1190.77
자동차용 경유(디젤)	(원/ℓ )	644.74	475.6	112.03	587.63	1232.37
실내 등유(리터당)	(원/ℓ )	603.80	72.45	67.63	140.08	743.88
보일러 등유(리터당)	(원/ℓ )	608.05	72.45	68.05	140.50	748.55
일반용프로판(LPG)	(원/kg)	1,817.17	14	119.52	133.52	1314.68
일반용부탄(LPG)	(원/kg)	1,157.30	352.08	150.94	503.02	1660.32

주: 세전가격은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의 2008년 12월 자료

유류세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와 교육세의 합계임.

자료: 한국석유공사

### Ⅲ. 주요국의 유류세 제도 및 세율

#### 1. 미 국

##### 가. 개요

□ 미국의 유류세(Fuel tax) 과세대상은 휘발유(gasoline), 디젤(diesel fuel), 희석경유(diesel-water fuel emulsion), 등유(kerosene)와, 대체연료로서 액화석유가스(liquefied petroleum gas; LPG),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LNG), 그리고 압축천연가스(compressed natural gas; CNG)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유류와 대체연료(이하 유류 등)에 대하여 연방정부의 소비세(excise tax)가 부과되고, 유류 등의 판매와 소비에 대하여 지방정부는 별도의 소비세를 징수하고 있음.

○ 유류 등에 대한 소비세의 형식은 대부분 종량세의 형태로 되어 있음.

□ 미국은 OECD 국가에 비하여 에너지에 대한 조세부과를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음<sup>16)</sup>.

○ 휘발유의 경우 IEA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2008년 6월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연방세금이 리터당 0.048달러, 지방정부의 세금이 리터당 0.057달러로 총 0.105달러에 이룸<sup>17)</sup>.

○ 디젤(diesel fuel)은 2008년 6월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연방세금이 리터당 0.065달러, 지방정부의 세금이 리터당 0.058달러로 총 0.123달러임.

□ 연료유의 대부분은 연방고속도로기금(Federal Highway Trust Fund)으로 적립되어 고

16) IEA(2006), p. 26

17) IEA, Energy Prices & Taxes 2nd Quarters 2008, p. 296-297

속도로 건설 등의 재원으로 사용됨<sup>18)</sup>.

## 나. 유류세 현황

〈표 4〉 미국의 연방 유류세(2008년 7월 기준)

(단위: \$/갤런)

구 분	소비세율	LUST tax <sup>1)</sup>	합계	
휘발유(gasoline) <sup>2)</sup>	자동차용	0.183	0.001	0.184
	항공용 (aviation gasoline)	0.194	-	0.194
경유(diesel fuel)	일반	0.243	0.001	0.245
	특정 버스	0.17	-	0.17
	면세버스용(dyed diesel)	-	0.001	0.001
희석경유 (diesel-water fuel emulsion)	일반	0.244		0.244
	국세청에 등록된 경우 경감세율 적용	0.198		0.198
등유(kerosene)	일반	0.243	0.001	0.245
	특정버스	0.17	-	0.17
	면세용 버스(dyed kerosene)	-	0.001 <sup>3)</sup>	0.001
	비상업용 항공연료	0.219	-	0.219
	상업용 항공연료	0.044	-	0.044
액화석유가스(LPG)	일반	0.183	-	0.183
액화천연가스(LNG)	일반	0.243	-	0.243
압축천연가스(CNG) <sup>4)</sup> (단위: \$/GGE)	일반	0.183	-	0.183

주: 1) Leaking Underground Storage Tank Trust Fund Tax은 자원보존및회복법(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에 따라 자동차용 유류판매에 대하여 0.1센트를 부과징수

2) 휘발유는 옥탄(octane) 비율이 75% 이상인 자동차연료용, 항공용 그리고 휘발유혼합물(gasoline blendstocks)을 포함

3) 대중교통용 도시간 버스와 학교용 버스의 경우 유류세가 면제되며 착색(dyed)되는데, 이 경우에도 LUST tax는 부과됨

4) 압축천연가스의 단위는 휘발유 1갤런 상당량(gasoline gallon equivalent; GGE)으로 1GGE는 126.67 Cubic feet를 의미

자료: IRS, IRS Publication 510, Exercise Taxes for 2008과 IRS Form 720

18) <http://www.fhwa.dot.gov/reports/fifahiwy/fifahi05.htm>

- 미국의 주별 유류세 부과현황을 보면 절반 이상인 26개 주에서 휘발유와 디젤에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디젤에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주는 16개주, 휘발유에 보다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주는 9개주로 나누어짐.

〈표 5〉 유류세 등 관련 조세항목과 세부담 수준

디젤과 휘발유 부과세금이 동일한 주	디젤에 보다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주	휘발유에 보다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주
Alaska, Arizona, California, Hawaii, Idaho, Louisiana, Massachusetts, Minnesota, Mississippi, Missouri, New Hampshire, North Carolina, North Dakota, Ohio, Oregon, Rhode Island, South Carolina, South Dakota, Texas, Utah, Virginia, Washington, West Virginia, Wisconsin, Wyoming, Dist. of Columbia	Alabama, Arkansas, Connecticut, Florida, Georgia, Illinois, Iowa, Kansas, Maine, Maryland, Montana, Nevada, New Jersey, New Mexico, Pennsylvania, Vermont	Colorado, Delaware, Indiana, Kentucky, Michigan, Nebraska, New York, Oklahoma, Tennessee
26개	16개	9개

〈표 6〉 미국의 주별 유류세(2008년 1월 기준)

(단위: 센트/갤런)

구분 주별	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fuel)			Gasohol		
	소비세	추가세	합계	소비세	추가세	합계	소비세	추가세	합계
Alabama	16.0	2.0	18.0	19.0		19.0	16.0	2.0	18.0
Alaska	8.0		8.0	8.0		8.0	8.0		8.0
Arizona	18.0		18.0	18.0		18.0	18.0		18.0
Arkansas	21.5		21.5	22.5		22.5	21.5		21.5
California	18.0		18.0	18.0		18.0	18.0		18.0
Colorado	22.0		22.0	20.5		20.5	22.0		22.0
Connecticut	25.0		25.0	37.0		37.0	25.0		25.0
Delaware	23.0		23.0	22.0		22.0	23.0		23.0
Florida	4.0	11.6	15.6	16.8	12.2	29.0	4.0	11.6	15.6
Georgia	7.5	11.0	18.5	7.5	12.3	19.8	7.5	11.0	18.5
Hawaii	17.0		17.0	17.0		17.0	17.0		17.0
Idaho	25.0	1.0	26.0	25.0	1.0	26.0	22.5	1.0	23.5
Illinois	19.0	1.1	20.1	21.5	1.1	22.6	19.0	1.1	20.1
Indiana	18.0		18.0	16.0		16.0	18.0		18.0
Iowa	20.7		20.7	22.5		22.5	19.0		19.0
Kansas	24.0		24.0	26.0		26.0	24.0		24.0
Kentucky	19.6	1.4	21.0	16.6	1.4	18.0	19.6	1.4	21.0
Louisiana	20.0		20.0	20.0		20.0	20.0		20.0
Maine	27.6		27.6	28.8		28.8	27.6		27.6
Maryland	23.5		23.5	24.25		24.25	23.5		23.5
Massachusetts	21.0		21.0	21.0		21.0	21.0		21.0
Michigan	19.0		19.0	15.0		15.0	19.0		19.0
Minnesota	20.0		20.0	20.0		20.0	20.0		20.0
Mississippi	18.0	0.4	18.4	18.0	0.4	18.4	18.0	0.4	18.4
Missouri	17.0	0.55	17.55	17.0	0.55	17.55	17.0	0.55	17.55
Montana	27.0		27.0	27.75		27.75	27.0		27.0
Nebraska	23.0	0.9	23.9	23.0	0.3	23.3	23.0	0.9	23.9
Nevada	24.0	0.055	24.055	27.0		27.0	24.0	0.055	24.055
New Hampshire	18.0	1.625	19.625	18.0	1.625	19.625	18.0	1.625	19.625
New Jersey	10.5	4.0	14.50	13.5	4.0	17.50	10.5	4.0	14.50
New Mexico	17.0	1.875	18.875	21.0	1.875	22.875	17.0	1.875	18.875
New York	8.0	16.4	24.4	8.0	14.65	22.65	8.0	16.4	24.4
North Carolina	29.9	0.25	30.15	29.9	0.25	30.15	29.9	0.25	30.15
North Dakota	23.0		23.0	23.0		23.0	23.0		23.0
Ohio	28.0		28.0	28.0		28.0	28.0		28.0
Oklahoma	16.0	1.0	17.0	13.0	1.0	14.0	16.0	1.0	17.0
Oregon	24.0		24.0	24.0		24.0	24.0		24.0

〈표 6〉의 계속

(단위: 센트/갤런)

구분 주별	휘발유(Gasoline)			경유(Diesel fuel)			Gasohol		
	소비세	추가세	합계	소비세	추가세	합계	소비세	추가세	합계
Pennsylvania	12.0	19.2	31.2	12.0	26.1	38.1	12.0	19.2	31.2
Rhode Island	30.0	1	31.0	30.0	1	31.0	30.0	1	31.0
South Carolina	16.0		16.0	16.0		16.0	16.0		16.0
South Dakota	22.0		22.0	22.0		22.0	20.0		20.0
Tennessee	20.0	1.4	21.4	17.0	1.4	18.4	20.0	1.4	21.4
Texas	20.0		20.0	20.0		20.0	20.0		20.0
Utah	24.5		24.5	24.5		24.5	24.5		24.5
Vermont	19.0	1.0	20.0	25.0	1.0	26.0	19.0	1.0	20.0
Virginia	17.5		17.5	17.5		17.5	17.5		17.5
Washington	36.0		36.0	36.0		36.0	36.0		36.0
West Virginia	20.5	11.7	32.2	20.5	11.7	32.2	20.5	11.7	32.2
Wisconsin	30.9	2.0	32.9	30.9	2.0	32.9	30.9	2.0	32.9
Wyoming	13.0	1	14.0	13.0	1	14.0	13.0	1	14.0
Dist. of Columbia	20.0		20.0	20.0		20.0	20.0		20.0

자료: Federation of Tax Administrators, [http://www.taxadmin.org/fta/rate/motor\\_fl.html](http://www.taxadmin.org/fta/rate/motor_fl.html)

□ 미국의 유류가격 대비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휘발유는 약 15.1~16.2%, 자동차용 디젤(diesel)은 14.7%임.

〈표 7〉 미국의 평균 가격과 유류세

(단위: 달러)

에너지원별	분기	세전가격	세금	세포함가격
산업용 경유(per liter) Light Fuel Oil for Industry	2008년 2분기	0.880	0.0045	0.0925
가정용 경유(per liter) Light Fuel Oil for Household	2008년 2분기	1.017	0.0049	0.1066
상업용 자동차 디젤(per liter) Automotive for commercial use	2008년 2분기	1.019	0.142	1.161
비상업용 자동차 디젤(per liter) Automotive for non-commercial use	2008년 2분기	1.019	0.142	1.161
고급무연휘발유(per liter) Premium Unleaded Gasoline	2008년 2분기	0.922	0.130	1.053
일반무연휘발유(per liter) Regular Unleaded Gasoline	2008년 2분기	0.892	0.130	1.023

자료: IEA, Energy Prices &amp; Taxes, 3rd Quarter 2008, p. 292~293

## 2. 일본

### 가. 개요

□ 일본<sup>19)</sup>의 유류세 과세대상은 휘발유(gasoline), 등유(kerosene), 디젤(diesel), 경유(light fuel oil), 중유(heavy fuel oil)와 천연가스로 LPG, LNG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세목별로 개별소비세(국세)인 석유 및 석탄세(Petroleum and Coal tax), 휘발유세(Gasoline tax), 항공유세(Aviation fuel tax), 석유가스세(LPG tax), 자동차용디젤세(Light oil delivery tax), 지방도로세(Local road tax)등이 있음.

- 석유 및 석탄세는 1978년 도입 당시 원유에 국한하여 과세하였으나, 1984년에는 과세대상을 LPG와 LNG로 확대하고 2003년에는 석탄까지 포함

○ 일본의 유류세는 종량세이며, 종가세인 소비세(consumption tax)가 5%의 세율로 별도 부과되고 있음.

□ 목적세

○ 도로 건설·보수의 재원을 위하여 자동차용 연료에 부과되는 조세로 휘발유세, 석유가스세, 자동차용디젤세가 있음.

- 휘발유세와 동일한 과세대상에 부과되는 지방도로세의 재원은 지방정부에 교부금으로 배분됨.

19) 일본 정부는 '3 Es' 정책-에너지안정정책(Energy security), 환경유지정책(Environmental sustainability), 에너지효율정책(Economic Efficiency)-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OECD, Energy policies of IEA Countries-Japan 2008 review, p. 40~41.).

○ 에너지안정정책은 석유, 천연가스와 석탄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국제적 공조 확대와 핵에너지 활용 확대 등을 의미하며,

○ 환경유지정책과 에너지효율정책은 저탄소배출을 위한 연구기술 개발 확대, 에너지 사업부분의 경쟁도입을 통해 에너지가격 인하, 환경유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관계 확대 등이 있음.

## 나. 유류세 현황

〈표 8〉 일본의 유류세(2008년 3월 기준)

(단위: 엔, %)

구 분	유류세	소비세율
석유및석탄세	원유(per liter)	5
	디젤(per liter)	5
	등유(per liter)	5
	천연가스(per ton)	5
	LPG(per ton)	5
휘발유(per liter) <sup>1)</sup>	53.8	5
자동차용 디젤(per liter)	32.1	5
자동차용 LPG(per liter)	9.8	5
항공유(per liter)	26.0	5

주: 1) 휘발유세(gasoline tax) 48.6엔과 지방도로세(local road tax) 5.2엔의 합계액

자료: OECD, Energy policies of IEA Countries- Japan 2008 review, p. 38과 IBFD

□ 일본의 유류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휘발유는 약 34.1%, 자동차용 디젤(diesel)은 23.1%~26.9%임.

○ 1993년 이후 휘발유는 리터당 53.8엔(지방도로세 포함), 디젤은 리터당 32.1엔으로 유지되다가, 2008년 2분기부터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45.4엔(지방도로세 포함), 디젤은 26.4엔으로 감세된 것으로 나타남.

〈표 9〉 일본의 평균 가격과 유류세

(단위: 엔)

에너지원별	분기	세전가격	유류세	소비세	세금합계	세포함가격
산업용 경유(per liter) Light Fuel Oil for Industry	2008년 2분기	85.5	-	4.3	4.3	89.8
가정용 등유(per liter) Kerosene for Household	2008년 2분기	99.8	-	4.9	4.9	104.7
상업용 자동차 디젤(per liter) Automotive for commercial use	2008년 2분기	82.7	26.4	4.1	30.5	113.2
비상업용 자동차 디젤(per liter) Automotive for non-commercial use	2008년 2분기	105.3	26.4	5.3	31.7	137.0
고급무연휘발유(per liter) Premium Unleaded Gasoline	2008년 2분기	101.9	45.4	7.4	52.8	154.7
상업용 자동차 LPG(per liter) Automotive for commercial use	2007년 4분기	66.2	9.8	3.8	13.6	79.8
비상업용 자동차 LPG(per liter) Automotive for non-commercial use	2007년 4분기	70.3	9.8	4.0	13.8	84.1

자료: IEA, Energy Prices & Taxes, 3rd Quater 2008, p. 179~180

### 3. 독일

#### 가. 개요

- 독일정부는 1999년 4월 도입된 친환경 조세개혁의 일환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자 자동차연료(motor fuel)와 난방연료(heating fuel)에 대한 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였고, 전력사용에 대한 조세 부과를 시행함.
  - 자동차연료에 대한 과세대상은 휘발유(gasoline)와 디젤(diesel)이며 유황(sulfur)의 함유량에 따라 세율이 결정됨.
  - 유류 등에 대한 소비세의 형식은 대부분 종량세이고, 추가적으로 종가세인 부가가치세(2007년 1월 1일 이후부터 19%)가 적용되고 있음.
    - 산업용과 상업 목적의 자동차용 경유(diesel)는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어 유류가격에는 반영되지 않음.
  - 기후변화 완화와 에너지 공급 안정을 위해서 2007년 1월 1일 이후부터 유류에 최소한의 친환경연료(biofuels)가 포함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 10〉 독일의 친환경 연료 법적 함유량(2007년~2015년)

(단위: %)

구 분		2007~2009	2010~2015
경유	친환경디젤 함유량 Biodiesel (share of diesel by energy content)	4.4	4.4
휘발유	친환경에탄올 함유량 Bioethanol (share of gasoline by energy content)	1.2	3.6

자료: OECD, Energy policies of IEA Countries- Germany 2007 review, p. 72

-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경유(diesel)에 친환경경유(biodiesel)가 최소한 4.4%가 포함되어야 하고, 휘발유에는 평균적으로 친환경에탄올(bioethanol)이 1.2% 포함되어야 함.

## 나. 유류세 현황

〈표 11〉 독일의 유류세(2007년 1월 기준)

(단위: 유로)

구 분		유류세
자동차연료	휘발유(per lieter)	0.6545 <sup>1)</sup>
	디젤(per lieter)	0.4704 <sup>2)</sup>
난방연료	난방유(per lieter)	0.0613
	LPG(per kg)	0.0606
	천연가스(per MWh)	5.5

주: 1) 휘발유의 경우 무연무황의 세율이지만, 무연유황은 0.670 유로/ℓ, 유연유황의 경우 0.721유로/ℓ로 오염물질이 많을수록 세부담 증가

2) 자동차용 디젤의 경우 무황의 세율이고 유황의 경우 0.486유로/ℓ임

자료: OECD, Energy policies of IEA Countries-Germany 2007 review, p. 35

□ 독일의 유류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휘발유는 약 59.9%, 자동차용 경유(diesel)는 39%(비사업용의 경우 48%)임.

〈표 12〉 독일의 평균 가격과 유류세

(단위: 유로)

에너지원별	분기	세전가격	유류세	부가세	세금합계	세포함가격
산업용 경유(per liter) Light Fuel Oil for Industry	2008년 2분기	0.668	0.0613	-	0.0613	0.729
가정용 경유(per liter) Light Fuel Oil for Household	2008년 2분기	0.668	0.0613	0.138	0.200	0.868
상업용 자동차 경유(per liter) Automotive for commercial use	2008년 2분기	0.735	0.470	-	0.470	1.205
비상업용 자동차 경유(per liter) Automotive for non-commercial use	2008년 2분기	0.735	0.470	0.229	0.699	1.434
고급무연휘발유(per liter) Premium Unleaded Gasoline	2008년 2분기	0.593	0.655	0.236	0.888	1.481
일반무연휘발유(per liter) Regular Unleaded Gasoline	2008년 2분기	0.593	0.655	0.236	0.888	1.481
비상업용 자동차용 LPG Automotive LPG for non-commercial use	2008년 2분기	0.449	0.092	0.103	0.195	0.643

자료: IEA, Energy Prices & Taxes, 3rd Quater 2008, p. 141~142

## 4. 이탈리아

### 가. 개요

- 이탈리아의 유류세는 소비세(Imposta di Consumo)의 항목으로 과세되고 있으며, 과세 항목으로는 휘발유(gasoline), 디젤(diesel), 천연가스, LPG, 경유(Light fuel oil), 중유(heavy fuel oil) 등이 있음.
- 유류세의 형식은 대부분 종량제이고, 추가적으로 종가제인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20%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음.
- 2008년 1월 1일부터 가정용으로 소비되는 천연가스의 경우 연간 사용량에 따라 부가가치세율은 10%와 20%로 누진적으로 적용됨.
  - 연간 480m<sup>3</sup> 이하를 소비하는 가정용에는 10%, 연간 480m<sup>3</sup>를 초과하는 경우 20%의 세율 적용

### 나. 유류세 현황

〈표 13〉 이탈리아의 유류세(2008년 9월 기준)

(단위: 유로)

구 분		유류세	
자동차연료	휘발유(per liter)	0.564	
	디젤(per liter) <sup>1)</sup>	0.417	
	LPG(per liter)	0.122	
난방연료	경유(per liter)	0.40	
	중유(per kg) <sup>2)</sup>	0.03~0.13	
	산업용 가스 <sup>3)</sup>	연간 1,200,000m <sup>3</sup> 이하	14.23/10 <sup>7</sup> kcal
		연간 1,200,000m <sup>3</sup> 초과	8.54/10 <sup>7</sup> kcal

〈표 13〉의 계속

(단위: 유로)

구 분			유류세	
난방연료	가정용 가스	북부-중부 지방	연간 120m <sup>3</sup> 이하	41.7/10 <sup>7</sup> kcal
			연간 120m <sup>3</sup> ~480m <sup>3</sup>	187.9/10 <sup>7</sup> kcal
			연간 480m <sup>3</sup> ~1,560m <sup>3</sup>	182.4/10 <sup>7</sup> kcal
			연간 1560m <sup>3</sup> 초과	201.1/10 <sup>7</sup> kcal
		남부지방	연간 120m <sup>3</sup> 이하	41.7/10 <sup>7</sup> kcal
			연간 120m <sup>3</sup> ~480m <sup>3</sup>	148.4/10 <sup>7</sup> kcal
			연간 480m <sup>3</sup> ~1,560m <sup>3</sup>	131.9/10 <sup>7</sup> kcal
			연간 1,560m <sup>3</sup> 초과	164.8/10 <sup>7</sup> kcal

주: 1) 친환경요인이 가미된 바이오디젤의 경우 리터당 0.08유로의 세금이 부과<sup>20)</sup>

2) 중유(heavy oil)의 경우 산업용과 유허합유량(1% 기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부과되는데, 일반적으로 가정용이면서 유허합유량이 1%를 초과하는 경우에 세부담이 높음.

3) 2008년 1월 1일부터 산업용 가스의 경우 지역별로 7.11/10<sup>7</sup>kcal 까지 별도로 세금이 부과됨.

자료: IEA, Energy Prices & Taxes, 3rd Quater 2008, p. 174~176과 OECD 자료 참조

(<http://www2.oecd.org/econstat/queries/index.htm> )

□ 이탈리아의 유류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휘발유는 약 55.6%, 자동차용 디젤(diesel)은 34.9~45.8%임.

〈표 14〉 이탈리아의 평균 가격과 유류세

(단위: 유로)

에너지원별	분기	세전가격	유류세	부가세	세금합계	세포합가격
산업용 경유(per litre) Light Fuel Oil for Industry	2008년 2분기	0.749	0.403	-	0.403	1.152
가정용 경유(per litre) Light Fuel Oil for Household	2008년 2분기	0.749	0.403	0.230	0.633	1.832
상업용 자동차 디젤(per litre) Automotive for commercial use	2008년 2분기	0.777	0.417	-	0.417	1.194
비상업용 자동차 디젤(per litre) Automotive for non-commercial use	2008년 2분기	0.777	0.417	0.239	0.656	1.433
고급무연휘발유(per litre) Premium Unleaded Gasoline	2008년 2분기	0.643	0.564	0.241	0.805	1.448
비상업용 자동차 LPG(per litre)	2008년 2분기	0.451	0.122	0.114	0.236	0.687

자료: IEA, Energy Prices & Taxes, 3rd Quater 2008, p. 170~171

20) <http://www2.oecd.org/econstat/queries/index.htm>에서 Italy 부분참조

## 5. 중 국

### 가. 개요

- 중국의 경우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법(Provisional Regulations on Consumption Tax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sup>21)</sup>에 따라 유류세를 부과 징수하고 있음.
  - 유류세의 과세대상은 휘발유(fuel oil), 항공유(aviation oil), 윤활유(lubricant oil), 용제(solvent oil), 나프타(naphta), 디젤(diesel)임.
  - 유류 등에 대한 소비세의 형식은 종량세이고, 종가세인 부가가치세는 석유과 가스의 경우 13%, 그 외 원유상품에 대하여는 17%가 적용됨<sup>22)</sup>.
  
- 소비세와 별도로 중국의 국경 내에서 원유나 천연가스, 석탄 등의 광물자원을 채굴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법(Provisional Regulations on Resource Tax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에 따라 자원세가 부과 징수됨<sup>23)</sup>.
  - 자원세의 납세의무자는 광물자원을 채취하는 법인 및 개인이며, 채굴 수량에 따라 과세되는 종량세 형식임.
  - 채굴된 천연원유(가공된 인공원유 제외)의 경우 1톤당 8~30위안, 천연가스(탄광에서 채취되는 가스 제외)는 1000m<sup>3</sup>당 2~15위안임.

21)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법, 2008년 11월 20일 접속  
<http://www.chinatax.gov.cn/n6669073/n6669088/6888623.html>

22) OECD(2008), p. 403.

23)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법, 2008년 11월 23일 접속  
<http://www.chinatax.gov.cn/n6669073/n6669088/6888463.html>

## 나. 유류세 및 자원세 현황

〈표 15〉 중국의 유류세(2007년 10월 기준)<sup>24)</sup>

(단위: 위안/ℓ)

구 분		유류세
자동차연료	휘발유	0.2
	디젤	0.1
기타연료	항공유	0.1
	윤활유(lubricant oil)	0.1
	나프타	0.2

자료: IBFD, Consumption tax와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법

〈표 16〉 중국의 자원세(2007년 10월 기준)<sup>25)</sup>

(단위: 위안/ton)

구 분		자원세
원유	Daqing Oil Administrative Bureau	24
	Shengli Oil Administrative Bureau	12
	Liaohe Oil Administrative Bureau	12
	Dagang Oil Administrative Bureau	12
	Henan Oil Administrative Bureau	12
	Xinjiang Oil Administrative Bureau	12
	Tarim Oil Exploitation Headquarters	12
	Tuha Oil Prospecting Center	12
	North China Oil Administrative Bureau	8
	Jilin Oil Administrative Bureau	8
	Zhongyuan Oil Administrative Bureau	8
	Jiangsu Oil Administrative Bureau	8
	Changqing Oil Exploration Bureau	8
	Jidong Oil Exploitation Development Corp.	8
	Jiangnan Oil Administrative Bureau	8
	Yumen Oil Administrative Bureau	8
	Qinghai Oil Administrative Bureau	8
	Sichuan Oil Administrative Bureau	8
	Qiangui Oil Exploration Bureau	8
	Yanchang Oil Administrative Bureau	8
Other continental oil exploration enterprises	8	
Dense oil and hi-condensed oil or Off-shore Oil Exploitation Centers	8	

24) <http://www.chinatax.gov.cn/n6669073/n6669088/6888623.html>

25) <http://www.chinatax.gov.cn/n6669073/n6669088/6888623.html>

〈표 16〉의 계속

(단위: 위안/1000m³)

구 분		자원세
천연가스	Sichuan Oil Administrative Bureau	15
	Daqing Oil Administrative Bureau	12
	Shengli Oil Administrative Bureau	8
	Liaohe Oil Exploration Bureau	8
	North China Oil Administrative Bureau	8
	Dagang Oil Administrative Bureau	8
	Zhongyuan Oil Exploration Bureau	8
	Henan Oil Administrative Bureau	8
	Xinjiang Oil Administrative Bureau	8
	Jidong Oil Exploration Development Corp.	8
	Tarim Oil Exploitation Headquarters	8
	Tuha Oil Exploitation Headquarters	8
	Jilin Oil Administrative Bureau	8
	Other natural gas exploitation enterprises	8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법 시행규칙, <http://www.chinatax.gov.cn/n6669073/n6669088/6888452.html>

## 6. 덴마크

### 가. 개요

□ 덴마크의 친환경조세정책(Green Tax Package)은 ① 에너지세(energy tax), ② 이산화탄소세(carbon dioxide tax; CO<sub>2</sub> Tax) 그리고 ③ 유황세(sulphur tax; SO<sub>2</sub> Tax)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sup>26)</sup>.

○ 에너지세는 소비세(Excise tax)의 일종으로 석탄, 석유(자동차용 연료인 휘발유와 디젤 포함), 천연가스와 전기의 사용에 대하여 부과되는 종량세로서 연료(fuel)별 조세법<sup>27)</sup>에 따라 다양하게 부과되고 있음.

26) 덴마크 국세청, <http://www.skm.dk/foreign/english/taxindenmark2008/6649/>

27) 석탄세법(coal tax law), 석유세법(oil tax law), 가스세법(gas tax law), 전기세법(electricity tax law)

- 이산화탄소세(CO<sub>2</sub> Tax)와 유황세(SO<sub>2</sub> Tax)는 환경세(environmental taxes)의 하나로 오염배출 부과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산화탄소세법(carbon dioxide tax law)과 유황세법(sulphur tax law)에 따라 부과되고 있음.
  - 이산화탄소세(CO<sub>2</sub> Tax)는 1993년부터 도입되어 에너지세와 동일하게 연료(fuel)별로 부과됨.
  - 1996년에 도입된 유황세(SO<sub>2</sub> Tax)는 유황의 함유량에 따라 부과되는 종량세임.
  - 유황이 함유된 유류에 대하여 SO<sub>2</sub> Tax가 부과되지만 CO<sub>2</sub> Tax는 부과되지 않고, 반대로 CO<sub>2</sub> Tax가 부과되는 유종에는 SO<sub>2</sub> Tax가 부과되지 않고 있어 중복과세는 되지 않고 있음.
- 유류세와 별도로 증가세인 부가가치세가 25%로 과세되는데,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환급됨.

□ 덴마크의 친환경조세(Green tax)가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기준으로 9.2%에 달하며, 향후 2008년 9.0%, 2009년에는 8.8%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sup>28)</sup>.

## 나. 유류세 현황

〈표 17〉 덴마크의 유류세(2008년 9월 기준)

(단위: 크로네)

에너지원	단위	에너지세	CO <sub>2</sub> Tax	SO <sub>2</sub> Tax	부가가치세
저황유(Low Sulphur Fuel Oil)	ton	293	-	102	25%
경유(Light Fuel Oil )	liter	1,890	0,247	-	25%
자동차 디젤(Automotive Diesel)	liter	2,487	0,247	-	25%
무연 휘발유(Premium Unleaded Gasoline)	liter	3,849	0,224	-	25%
유연 휘발유(Leaded Gasoline)	liter	3,23	0,224	-	25%
천연가스(Natural gas)	m <sup>3</sup>	2,020	0,220	-	25%

자료: IEA, Energy Prices & Taxes, 3rd Quater 2008, p. 118~121

28) Statistics Denmark and the Danish Ministry of Finance, August 2008, <http://www.skm.dk/foreign/statistics/thetaxstructure.html>

□ 덴마크의 유류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휘발유는 약 56.5%, 자동차용 경유(diesel)는 32.71~46.2%임.

〈표 18〉 덴마크의 평균 가격과 유류세

(단위: 크로네)

에너지원별	분기	세전가격	유류세 <sup>1)</sup>	부가세	세금합계	세포함가격
산업용 저황유(per ton) Low Sulphur Oil for Industry	2008년 2분기	3296	365	-	365	3634
산업용 경유(per liter) Light Fuel Oil for Industry	2008년 2분기	6.02	0.222	-	0.222	6.242
가정용 경유(per liter) Light Fuel Oil for Household	2008년 2분기	5.720	2.137	1,964	4,101	9,822
상업용 자동차 디젤(per liter) Automotive for commercial use	2008년 2분기	5.625	2.734	-	2,734	8,359
비상업용 자동차 디젤(per liter) Automotive for non-commercial use	2008년 2분기	5.628	2.734	2,091	4,825	10,453
고급 무연 휘발유(per liter) Premium Unleaded Gasoline	2008년 2분기	4,889	4,103	2,248	6,351	11,239

주: 1) 유류세에 환경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임.

자료: IEA, Energy Prices & Taxes, 3rd Quater 2008, p. 114~115

## 7. 노르웨이

### 가. 개요

□ 노르웨이에서 유류 사용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는 ① 소비세(excise tax), ② 이산화탄소세(carbon dioxide tax; CO<sub>2</sub> Tax) 그리고 ③ 유황세(sulphur tax; SO<sub>2</sub> Tax)로 모두 종량세임.

○ 소비세(Excise tax)의 한 항목으로 석탄, 석유, 천연가스, 전기의 사용에 대하여 부과되는 종량세임.

- 이산화탄소세(CO<sub>2</sub> Tax)는 유황유, 자동차용 디젤, 휘발유, 천연가스, LPG에 부과되는 종량세이며, 유황세(SO<sub>2</sub> Tax)는 유황의 함유량에 부과되는 종량세임.
  - 유황함유량이 0.05%~0.25%인 경우 리터당 0.07 NOK의 유황세가 부과되는데, 과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0.25%씩 추가로 징수됨.
- 유류세와 별도로 증가세인 부가가치세가 25%로 과세되는데,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환급됨.

## 나. 유류세 현황

〈표 19〉 노르웨이의 유류세(2008년 9월 기준)

(단위: 크로네)

에너지원	단위	소비세	CO <sub>2</sub> Tax	SO <sub>2</sub> Tax <sup>4)</sup>	부가가치세
저황유(Low Sulphur Fuel Oil)	liter	-	0,55	0,07	25%
경유(Light Fuel Oil)	liter	0,85	0,55	0,07	25%
중유(Heavy Fuel Oil)	liter	0,85	0,55	0,07	25%
자동차 디젤(Automotive Diesel)	liter	3,40 <sup>1)</sup>	0,55	0,07	25%
		3,45 <sup>2)</sup>	0,55	0,07	25%
무연 휘발유(Premium Unleaded Gasoline)	liter	4,28	0,82	0,07	25%
유연 휘발유(Leaded Gasoline)	liter	4,28	0,82	0,07	25%
천연가스(Natural gas)	m <sup>3</sup>	<sup>3)</sup>	0,48	-	25%

주: 1) 디젤의 유황 함유량이 0.001% 이하인 경우

2) 디젤의 유황 함유량이 0.001% 초과하고 0.005% 이하인 경우

3) 천연가스의 사용량이 미미하여, 천연가스의 소비세가 나타나지 않음

4) 유황 함유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

자료: IEA, Energy Prices & Taxes, 3rd Quater 2008, p. 225~227,

<http://www2.oecd.org/econinst/queries/index.htm>

- 노르웨이의 유류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휘발유는 약 57.6%, 자동차용 경유(diesel)는 37.7~50%임.

〈표 20〉 노르웨이의 평균 가격과 유류세

(단위: 크로네)

에너지원별	분기	세전가격	유류세 <sup>주</sup>	부가세	세금합계	세포함가격
산업용 경유(per liter) Light Fuel Oil for Industry	2008년 2분기	6.3	1.4	-	1.4	7.7
가정용 경유(per liter) Light Fuel Oil for Household	2008년 2분기	6.3	1.4	1.9	3.3	9.6
상업용 자동차 디젤(per liter) Automotive for commercial use	2008년 2분기	6.35	3.85	-	3.85	10.2
비상업용 자동차 디젤(per liter) Automotive for non-commercial use	2008년 2분기	6.35	3.85	2.55	6.40	12.75
고급 무연 휘발유(per liter) Premium Unleaded Gasoline	2008년 2분기	5.58	4.97	2.63	7.60	13.19

주: 유류세에 환경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임.

자료: IEA, Energy Prices & Taxes, 3rd Quater 2008, p. 221~222

## 8. 스위스

### 가. 개요

□ 스위스의 유류세는 소비세(excise tax)로 부과되는 종량세이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이산화탄소세(CO<sub>2</sub> Tax)와 비조세 성격인 기후기금(Climate Cent), 유황 함유량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조세(incentive tax on Sulphur), 유류 비축을 위한 긴급기금(Emergency Fund)이 있음.

○ 자동차용 연료 중 2000년 1월 1일부터 유연휘발유의 판매가 중지되어 현재 무연고급휘발유에 대해서만 유류세가 부과됨.

- 유럽의 국가 중 스위스는 디젤에 대한 유류세율을 휘발유보다 높게 부과하고 있음.

○ 2008년 1월 1일부터 도입된 이산화탄소세(CO<sub>2</sub> Tax)는 연료용 유류(heating oil)와 천연가스(natural gas), 석탄에 대하여 부과되는 종량세임.

- 연료용 유류인 경유(light fuel oil)에는 1리터당 0.032 스위스프랑, 저황유류(Low sulphur fuel oil)의 경우 톤당 38.06 스위스프랑, 천연가스는 10<sup>7</sup>kcal 당 27.6 스위스

프랑, 석탄은 톤당 31.69 스위스프랑으로 과세

- 이산화탄소의 목표배출량<sup>29)</sup>을 감소하지 못하는 경우 2008년부터 스위스 정부는 이산화탄소 1톤당 12스위스프랑을 부과하고 있음.

○ 2004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용 연료에 유황의 함유량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리터당 0.03 스위스프랑이 부과됨.

- 2004년 도입 당시 유황함유량 기준은 0.001%이었으나, 2005년 1월 1일부터 0.005%로 엄격해짐.

○ 스위스정부는 유류공급의 안정을 위해 유류회사로 하여금 의무적인 비축유를 저장하도록 통제하고 있는데, 저장비용에 상응하는 비용보전을 위해 긴급기금(Emergency Fund)을 징수하고 있음.

- 초과징수된 긴급기금(Emergency Fund)은 환급되는데 2008년의 경우 경유와 저황유에 대해서 환급되는 것으로 나타남.

- 스위스 내 천연가스는 저장탱크에서 보관되고 있지 않아, 천연가스에는 긴급기금이 부과되지 않음.

○ 스위스에서 소비되는 유류에는 증가세인 부가가치세가 7.6%로 과세되며,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환급됨.

□ 비정부기관인 스위스유류협회(Swiss Oil Association)는 2005년 10월 1일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할 목적으로 자동차용 연료인 가솔린과 디젤에 대하여 1리터당 0.015스위스프랑을 기후기금(Climate Cent)으로 징수하고 있음.

○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0% 감축할 목적으로, 기후기금(Climate Cent)은 2012년까지 지속될 예정

○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① 연료용 유류와 가스 등에 부과되는 이산화탄소세(CO<sub>2</sub> Tax)는 정부에서, ② 자동차용 연료에 부과되는 기후기금(Climate Cent)은 민간에서 징수하고 있음.

29) 1990년 대비 2006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6% 감축이 불가능한 경우 12스위스프랑으로 과세되며, 2007년의 경우 10% 감축 불가시 24스위스프랑, 2008년의 목표감축량이 13.5%이며 감축 불가 시에는 36스위스프랑으로 과세

나. 유류세 현황

〈표 21〉 스위스의 유류세(2008년 9월 기준)

(단위: 스위스프랑)

에너지원	단위	유류세	추가세 <sup>1)</sup>	CO <sub>2</sub> Tax	기후기금	긴급기금	부가 가치세
저황유(Low Sulphur Fuel Oil)	ton	3,6	-	38,06	-	△1,27	7,6%
경유(Light Fuel Oil )	liter	0,003	-	0,032	-	△0,00195	7,6%
자동차 디젤 (Automotive Diesel)	liter	0,759	0,03	-	0,015	0,01505	7,6%
무연 휘발유 (Premium Unleaded Gasoline)	liter	0,731	0,03	-	0,015	0,00405	7,6%
천연가스(Natural gas)	10 <sup>7</sup> kcal	1,89	-	27,6	-	-	7,6%

주: 1) 추가세는 자동차 연료의 유황함유량이 0.00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되는 것임.

자료: IEA, Energy Prices & Taxes, 3rd Quater 2008, p. 272~275

□ 스위스의 유류가격 대비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휘발유는 약 45.5%, 자동차 용 경유(diesel)는 42.39~43.74%를 차지하고 있음.

〈표 22〉 스위스의 평균 가격과 유류세

(단위: 스위스프랑)

에너지원별	분기	세전가격	유류세 <sup>1)</sup>	부가세	세금합계	세포함가격
산업용 저황유(per ton) Low Sulphur Oil for Industry	2007년 4분기	610.3	4.7	-	4.7	615
산업용 경유(per liter) Light Fuel Oil for Industry	2008년 2분기	0.986	0.0329	-	0.0329	1,0189
가정용 경유(per liter) Light Fuel Oil for Household	2008년 2분기	1,0803	0.0329	0,0846	0,1175	1,1978
상업용 자동차 디젤(per liter) Automotive for commercial use	2008년 2분기	1,052	0,774	-	0,774	1,826
비상업용 자동차 디젤(per liter) Automotive for non-commercial use	2008년 2분기	1,187	0,774	0,149	0,923	2,110
고급 무연 휘발유(per liter) Premium Unleaded Gasoline	2008년 2분기	1,040	0,735	0,135	0,870	1,910
산업용 천연가스(per 10 <sup>7</sup> kcal) Natural Gas for Industry	2008년 2분기	756.9	33	-	33	789.9
가정용 천연가스(per 10 <sup>7</sup> kcal) Natural Gas for Households	2008년 2분기	1042,3	33	81,7	114,7	1157,0

주: 1) 유류세에 환경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임.

자료: IEA, Energy Prices & Taxes, 3rd Quater 2008, p. 268~269

## 9. 오스트리아

### 가. 개요

□ 오스트리아의 유류세는 광물유류세(Mineral Oil Tax)와 긴급저장비용(Emergency Stock Fee)로 나누어짐.

○ 오스트리아의 유종별로 부과되는 소비세는 광물유류세(Mineral Oil Tax)로, 유황유, 경유, 자동차용 디젤, 휘발유, 천연가스, 석탄 등에 부과되는 종량세임.

- 자동차용 연료 중 1994년 1월 1일부터 유연휘발유의 판매가 중지되어 현재 무연고급휘발유에 대해서만 유류세가 부과됨.

○ 스위스의 비축유에 대한 긴급기금(Emergency Fund)을 징수하는 것과 유사하게 오스트리아에서도 긴급저장비용(Emergency Stock Fee)이 있는데, 오스트리아의 긴급저장비용은 소비세의 한 항목임.

○ 오스트리아에서는 유류세 소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상대적으로 높은 20%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으며,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환급됨.

### 나. 유류세 현황

〈표 23〉 오스트리아의 유류세(2008년 9월 기준)

(단위: 유로)

에너지원	단위	광물유류세	긴급저장비용	부가가치세
고황유(High Sulphur Fuel Oil) <sup>1)</sup>	ton	60	7,188	20%
경유(Light Fuel Oil) <sup>2)</sup>	liter	0,05042	0,00899	20%
자동차 디젤(Automotive Diesel)	liter	0,375	0,01032	20%
무연 휘발유(Premium Unleaded Gasoline)	liter	0,475	0,00895	20%
천연가스(Natural gas)	m <sup>3</sup>	0,066	-	20%

주: 1) 유황의 함유량이 0.4% 이하인 경우에는 저황유(Low sulphur fuel oil)로 그 외에는 고황유(High sulphur fuel oil)로 분류

2) 유황함유량이 0.1%인 경우에는 가정용 경유, 0.2%인 경우에는 산업용 경우에 해당

자료: IEA, Energy Prices & Taxes, 3rd Quater 2008, p. 87~90

□ 오스트리아의 유류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휘발유는 약 50.2%, 자동차용 경유(diesel)는 43.7~85.5%임.

〈표 24〉 오스트리아의 평균 가격과 유류세

(단위: 유로)

에너지원별	분기	세전 가격	유류세 <sup>1)</sup>	부가세	세금 합계	세포함 가격
산업용 저황유(per ton) Low Sulphur Oil for Industry	2008년 3분기	501.78	67.70	-	67.70	3634
산업용 경유(per liter) Light Fuel Oil for Industry	2008년 2분기	0.573	0.109	-	0.109	0.682
가정용 경유(per liter) Light Fuel Oil for Household	2008년 3분기	0.784	0.109	0.179	0.288	1.073
상업용 자동차 디젤(per liter) Automotive for commercial use	2008년 2분기	0.575	0.386	-	0.386	0.962
비상업용 자동차 디젤(per liter) Automotive for non-commercial use	2008년 3분기	0.804	0.386	0.238	0.624	1.428
고급 무연 휘발유(per liter) Premium Unleaded Gasoline	2008년 3분기	0.722	0.485	0.241	0.727	1.448
가정용 천연가스(per 10 <sup>7</sup> kcal) Natural Gas for Households	2008년 2분기	497.62	69.34	113.39	182.73	680.36

주: 1) 소비세로서 유류세와 긴급저장비용의 합계액  
 자료: IEA, Energy Prices & Taxes, 3rd Quater 2008, p. 83~84

## 10. 포르투갈

### 가. 개요

- 포르투갈의 유류세는 소비세(Excise tax)의 하나로 종량세로 부과되고 있음.
  - 유종별로 유황유, 경유, 자동차용 디젤, 휘발유로 구분하고, 천연가스와 석탄에 대하여도 과세되며, 별도의 환경세가 부과되고 있지 아니함.
  - 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20% 부과되지만,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12%,

천연가스에 대하여는 5%로 차등과세

- 어민 보호를 위해서 어업용 경유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음.
- 공공수송 목적(자동차 임대업 제외), 여객운송, 농업용 트랙터와 기계장치에 사용되는 자동차용 디젤에 대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100% 환급되고, 자가용이 아닌 상업목적의 경우에는 50% 환급

## 나. 유류세 현황

〈표 25〉 포르투갈의 유류세(2008년 9월 기준)

(단위: 유로)

에너지원	단위	유류세	부가가치세
저황유(Low Sulphur Fuel Oil)	ton	15.3	-
경유(Light Fuel Oil)	kg	0.02	12%
난방용 디젤 (Gas oil used for heating purposes)	liter	0.91	20%
자동차 디젤(Automotive Diesel)	liter	0.364	20%
무연 휘발유 (Premium Unleaded Gasoline)	liter	0.583	20%
유연 휘발유 (Premium Leaded Gasoline)	liter	0.65	20%
차량용 천연가스 (Natural gas used as carburant)	giga joule	2.78	5%
천연가스(Natural gas)	giga joule	-	-

자료: IEA, Energy Prices & Taxes, 3rd Quarter 2008, p. 237~242,  
<http://www2.oecd.org/econstat/queries/index.htm>

- 포르투갈의 유류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휘발유는 약 55.2%, 자동차용 경유(diesel)는 39~44%임.

〈표 26〉 포르투갈 평균 가격과 유류세

(단위: 유로)

에너지원별	분기	세전 가격	유류세	부가세	세금 합계	세포함 가격
산업용 저황유(per ton) Low Sulphur Oil for Industry	2008년 2분기	530.70	15.30	-	15.30	546.00
가정용 경유(per liter) Light Fuel Oil for Household	2008년 2분기	0.732	0.176	0.109	0.285	1.017
상업용 자동차 디젤(per liter) Automotive for commercial use	2008년 2분기	0.75	0.364	0.117	0.481	1.232
비상업용 자동차 디젤(per liter) Automotive for non-commercial use	2008년 2분기	0.75	0.364	0.234	0.599	1.349
고급 무연 휘발유(per liter) Premium Unleaded Gasoline	2008년 2분기	0.691	0.583	0.268	0.851	1.542
비상업용 자동차 LPG(per liter) Automotive LPG for non-commercial use	2008년 2분기	0.506	0.056	0.118	0.173	0.679
산업용 천연가스(per 10 <sup>7</sup> kcal) Natural Gas for Industry	2008년 2분기	343.28	-	-	-	343.28
가정용 천연가스(per 10 <sup>7</sup> kcal) Natural Gas for Household	2008년 2분기	844.02	-	42.20	42.20	886.22

자료: IEA, Energy Prices & Taxes, 3rd Quarter 2008, p. 238~239

## 11. 프랑스

### 가. 개요

□ 프랑스 유류세는 소비세(Excise tax)의 하나로 종량세로 부과되고 있음.

- 유종별로 유황유, 경유, Automotive Diesel, 휘발유로 구분하여 소비세를 과세하고 있음.

□ 소비세로 TIPP(Taxe Intérieure sur les Produits Pétroliers)<sup>30)</sup>를 부과하고 있음.

- TIPP는 종량세로서 저유황유와 고유황유에 €18.5/1,000kg, 경유(산업용, 농업용)는

€56.6/1,000kg, Automotive Diesel €0.428/litre로 과세하고 있음.

□ 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19.6% 부과됨.

○ 산업용, 전력생산용, Automotive Diesel(산업용,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음.

□ 천연가스는 산업용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TICGN(Tax Intérieure de la Consommation de Gaz Naturel)를 부과함.

○ 모든 천연가스에 부과되 가정용 난방목적의 천연가스와 전력생산용은 부과하지 않음.

○ 천연가스의 부가가치세는 두 가지의 복합 세율로 이루어져 있음. 5%의 고정세율과 실제 소비에 부과하는 19.6%로 이원화되어 있음.

〈표 27〉 프랑스의 에너지별 평균가격과 유류세

(단위: 유로)

에너지원별	단위	분기	세전가격	소비세	VAT (19,6%)	세금합계	세포함 가격	
저유황유 (Low Sulphur Fuel Oil)	산업용	€/1,000kg	3Q2008 <sup>1)</sup>	489,02	18,5	-	18,5	507,52
고유황유 (High Sulphur Fuel Oil)	산업용	€/1,000kg	3Q2008	465,53	18,5	-	18,5	484,03
경유 (Light Fuel Oil)	산업용	€/1,000 litres	2Q2008 <sup>2)</sup>	679,9	56,6	-	56,6	736,5
	가정용		3Q2008	741,02	56,6	156,34	212,94	953,96
Automotive Diesel	상업용	€/litre	3Q2008	0,730	0,428	-	0,428	1,158
	비상업용			0,730	0,428	0,227	0,655	1,385
고급 무연 휘발유	98 RON	€/litre	2Q2008	0,627	0,606	0,242	0,848	1,475
	95 RON		3Q2008	0,606	0,606	0,238	0,844	1,449
천연가스	산업용	per 10 <sup>7</sup> Kcal GCV	3Q2008	419,76	13,84	-	13,84	433,60
	가정용		2Q2008	525,19	-	93,02	93,02	618,21

주: 1) 1759,40원 per EUR(환율은 2008년 10월 평균)

2) 1605,31원 per EUR(환율은 2008년 6월 평균)

자료: Energy Prices & Taxes, 3rd Quarter 2008

30) 2000년 10월 1일부터 2002년 7월 21일까지 TIPP는 원유가격과 반비례로 과세하였음. 즉 원유가격이 10% 이상 올랐을 경우 TIPP는 같은 금액만큼 내려서 부과하였음.

- 프랑스의 유류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휘발유는 약 57.5%(98RON), 58.2%(95RON), Automotive Diesel은 40.0%(상업용), 47.3%(비상업용), 천연가스는 3.19%(산업용), 15.04%(가정용)임.

## 12. 영 국

### 가. 개요

- 영국은 지난 15년 동안 꾸준히 유류세를 인상해 오고 있음. 또한 2009년 4월에도 인상할 예정임.
- 석유제품에 대해서 개별소비세로서 탄화수소세(hydrocarbon tax)를 과세하고 있으며, 과세체계는 종량세 구조임. 석유가스, 전기, 석탄 등에만 부과하는 기후 변화세(Climate Change levy) 또한 종량세임<sup>31)</sup>. 여기에 휘발유 등 석유제품에 부가가치세 기본세율 17.5% 부과함<sup>32)</sup>.
  - 전력생산, 자동차용 디젤유(상업용) 등은 부가가치세 환급됨<sup>33)</sup>.
- 영국의 개별소비세는 사치세가 아니라 환경세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 환경세 중에서 기후변화세는 온실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산업 또는 상업용으로 공급되는 특정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2001년 4월 1일부터 과세
  - 영국은 2010년까지 이산화탄소 20%를 감소할 목적으로 시행하였음.
  - 기후변화세의 비과세대상은 비상업용으로서 주행용 연료(휘발유, 디젤, CNG, LPG), 항공용 등유 및 가스, 재생가능한 에너지 등이 있음.

---

31) <http://www.ifs.org.uk/>

32) 가정용 경유, 천연가스, 석탄, 전기의 부가가치세는 경감세율로 5% 적용

33) Energy Prices & Taxes, 3rd Quarter 2008, p. 288

〈표 28〉 영국의 기후 변화세(Climate Change levy)

(2008. 4. 1 기준, 단위: 파운드)

세분류	단위	세금
전기	kw, hour당	0.00456
가스	kw, hour당	0.00159
석유가스, 가스성 탄화수소 등	kg	0.01018
기타	kg	0.01242

자료: 영국 국세청(<http://www.hmrc.gov.uk/>)

## 나. 유류세 현황

〈표 29〉 영국의 에너지원별 유류세 부과 현황

(2008. 12. 1 기준)

	구 분	단위	세율
휘발유 (Petrol)	무황 휘발유(Sulphur free petrol)	£/ℓ	0.5235
	초저황 휘발유(Ultra low sulphur petrol)	£/ℓ	0.5235
	무연 휘발유(Unleaded petrol)	£/ℓ	0.5235
	유연 휘발유, 기타 경유(Leaded petrol, other lights oils)	£/ℓ	0.6207
디젤 (Diesel)	초저황 디젤(Ultra low sulphur diesel)	£/ℓ	0.5235
	디젤(Diesel)		
	무황 디젤(Sulphur free diesel)		
할인세율 적용연료 (Rebated oils)	난방용 경유 (light oil for use as furnace fuel)	£/ℓ	0.0966
	off road 차량용 등유 (kerosene for use as motor fuel off road)	£/ℓ	0.1007
	비주행용 바이오경유(Biodiesel)	£/ℓ	0.1007
	가스유(gas oil)와 혼합된 바이오경유	£/ℓ	0.1007
	중유, 등유	£/ℓ	0.0966
바이오연료 (Biofuels)	혼합 바이오경유	£/ℓ	0.3235
	바이오에탄올(Bioethanol)	£/ℓ	0.3235
주행용 가스연료 (Road fuel gases)	천연가스(Natural Gas)	£/kg	0.1660
	기타 모든 가스	£/kg	0.2077
	연료유	£/kg	0.0966
	가스유(gas oil)	£/kg	0.1007
항공 연료 (Aviation Fuel)	개인 레저용 항공유	£/ℓ	0.5235
	항공용 휘발유	£/ℓ	0.3103

주: 2201.10원 per £(환율은 2008년 12월 1일 평균)

자료: 영국 국세청(<http://www.hmrc.gov.uk/>)

- 2009년 4월 1일부터는 초저황 디젤, 무황 디젤은 £0.5419/ℓ으로, 무연휘발유, 초저황 휘발유, 무황 휘발유는 £0.5419/ℓ로 각각 인상됨.

## 13. 캐나다

### 가. 개요

- 캐나다의 유류세는 연방정부에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Excise Tax)와 부가가치세(GST: Goods and Services Tax)가 있음.
  - 개별소비세는 종량세로써 휘발유 0.1 CAD/ℓ, 디젤유 0.04 CAD/ℓ를 부과하며, 난방유와 천연가스 등은 면세임.
  - 대체연료에 대해서는 연방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고, 휘발유 또는 디젤유와 혼합된 에탄올 및 바이오디젤유의 경우 비석유 부분(non-petroleum portion)에 대해서 면세임.
  - 휘발유 등 모든 석유제품에 GST 5%를 부과함.
    - 3개주(New Foundland, Nova Scotia, New Brunswick)에서는 연방세인 GST와 주세를 통합하여 단일세목으로 HST(Harmonized Sales Tax)으로 부과함.
-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이외에 휘발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각 지방정부는 지방세를 부과함.
  - 주세 : 각 주는 휘발유에 최소 0.062 CAD/ℓ(Yukon준주), 최대 0.158 CAD/ℓ(Prince Edward Island주) 부과
  - 시세 : 3개 시는 휘발유에 0.015 CAD/ℓ(몬트리올), 0.06 CAD/ℓ(벤쿠버), 0.025CAD/ℓ(빅토리아)를 추가로 부과
    - 벤쿠버 및 빅토리아시에서는 디젤유에 대해서도 같은 금액의 시세를 부과함.
- 탄소세(Carbon Tax)는 British Columbia주에서 최초로 도입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부

과중이며, 연방정부의 경우 여야간의 쟁점으로 논의중임.

○ British Columbia주 탄소세 : 휘발유 0.0234 CAD/ℓ, 디젤유 및 난방유 0.0269 CAD/ℓ

## 나. 유류세 현황

〈표 30〉 캐나다의 에너지원별 유류세 부과 현황(Ontario 주)

	단위	세전가격	소비세	지방세	GST	세금합계	세포함가격
휘발유	CAD <sup>1)</sup> /ℓ	0.981	0.1 <sup>2)</sup>	0.147	0.061(5%)	0.308	1.289
경유	CAD/ℓ	1,175	0.04	0.143	0.068(5%)	0.251	1,426
AVgas/Turbo	CAD/ℓ	1,653	0,11/0,04	0.027	0,09(5%)	0.227	1,880
프로판 (Automotive)	CAD/ℓ	0.68	0	0.043	0.036(5%)	0.079	0.759
Furnace Oil(난방)	CAD/ℓ	1,294	0	0	0,065(5%)	0,065	1,359
천연가스(난방)	CAD/ℓ	n,a	0	0	5%	5%	n,a.

주: 1) 1015.16원 per CAD(환율은 2008년 7월 22일 평균)

2) 무연휘발유와 무연항공용휘발유의 소비세. 유연휘발유, 유연항공용휘발유의 소비세는 0.11CAD/ℓ임.

3) 토론토의 2008.07.22일 소비자가격

4) GST 세율 5%. 단, 3개주(뉴펀들랜드, 노바스코시아, 뉴브런스위크)는 연방세인 5% GTS와 8% 주세를 통합하여 단일세목으로 HST(Harmonized Sales Tax)으로 13% 부과

자료: 1) 기획재정부 내부자료

2) 캐나다 국세청 <http://www.cra-arc.gc.ca/E/pub/et/currate/currate-e.html>

〈표 31〉 캐나다의 각 주별 지방세 부과 현황

Province	단위	휘발유	경유	AVgas/ Turbo	프로판 (Automotive)	Furnace Oil/천연가스(난방)	비고
New Foundland & Labrador	%	13	13	13	13	0	GST(연방세)와 지방세를 통합하여 13%의 HST 부과
Nova Scotia	%	13	13	13	13	0	
New Brunswick	%	13	13	13	13	0	
Prince Edward Island	CAD <sup>1)</sup> /ℓ	0.158	0.202	0.007	0.17	0	
Quebec(QST)	CAD/ℓ	0.152	0.162	0.03	0	0	몬트리올시는 휘발유에 도심세 0.015CAD/ℓ 부과
	%	7.5	7.5	7.5	7.5	7.5	
Ontario	CAD/ℓ	0.147	0.143	0.027	0.043	0	
Manitova	CAD/ℓ	0.115	0.115	0.032	0.03	0	
Saskatchewan	CAD/ℓ	0.15	0.15	0.015	0.09	0	
Alberta	CAD/ℓ	0.15	0.15	0.015	0.09	0	
British Columbia	CAD/ℓ	주세 : 0.145 탄소세: 0.023	주세 : 0.15 탄소세: 0.027	0.02	0.027	주세 : 0 탄소세 <sup>2)</sup> : 0.027	
Yukon	CAD/ℓ	0.062	0.072	0.011	0	0	
Northwest Territories	CAD/ℓ	0.107/0.046	0.091	0.01	0	0	고속도로가 없는 지역은 휘발유에 0.045CAD/ℓ만 부과함.
Nunavut	CAD/ℓ	0.107/0.046	0.091	0.01	0	0	

주: 1) 933.36원 per CAD(환율은 2008년 1월 평균)

2) 난방유에만 탄소세 부과

자료: 기획재정부 내부자료

〈표 32〉 캐나다의 British Columbia주 탄소세 부과 현황<sup>1)</sup>

	단위	2008. 7. 1	2009. 7. 1	2010. 7. 1	2011. 7. 1	2012. 7. 1
<b>액체연료</b>						
휘발유		0,0234	0,0351	0,0468	0,0585	0,0702
경유 <sup>2)</sup>		0,0269	0,0404	0,0538	0,0673	0,0807
중유		0,0315	0,0473	0,0630	0,0788	0,0945
항공연료(Aviation Fuel)	CAD/ℓ	0,0246	0,0369	0,0492	0,0615	0,0738
항공유(Jet fuel)		0,0261	0,0392	0,0522	0,0653	0,0783
등유		0,0254	0,0381	0,0508	0,0635	0,0762
나프타		0,0255	0,0383	0,0510	0,0638	0,0765
메탄올		0,0109	0,0164	0,0218	0,0273	0,0327
<b>가스연료</b>						
marketable natural gas	CAD/GJ <sup>3)</sup> or CAD/M <sup>3,4)</sup>	0,4966	0,7449	0,9932	1,2415	1,4898
		0,0190	0,0285	0,0380	0,0475	0,0570
raw natural gas	CAD/M <sup>3)</sup>	0,0190	0,0285	0,0380	0,0475	0,0570
프로판	CAD/ℓ	0,0154	0,0231	0,0380	0,0385	0,0462
부탄	CAD/ℓ	0,0176	0,0264	0,0308	0,0440	0,0528
에탄	CAD/ℓ	0,0980	0,0147	0,0352	0,0245	0,0294
정제 가스	CAD/M <sup>3)</sup>	0,0176	0,0264	0,0196	0,0440	0,0528
코크스로가스	CAD/M <sup>3)</sup>	0,0161	0,0242	0,0352	0,0403	0,0483

주: 1) 1027,20원 per CAD(환율은 2008년 7월 1일 평균)

2) 디젤, 기관차용 연료, 난방유

3) Gigajoule

4) cubic meters

자료: [http://www.sbr.gov.bc.ca/business/Consumer\\_Taxes/consumer\\_taxes.htm](http://www.sbr.gov.bc.ca/business/Consumer_Taxes/consumer_taxes.htm)

□ British Columbia 주의 탄소세는 CO<sub>2</sub> 배출량에 따라 각 연료별 세율이 다름.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음.

○ 바이오연료, 바이오디젤, 에탄올, 생물자원, 목재 등은 탄소세 환급 가능

## 14. 뉴질랜드

### 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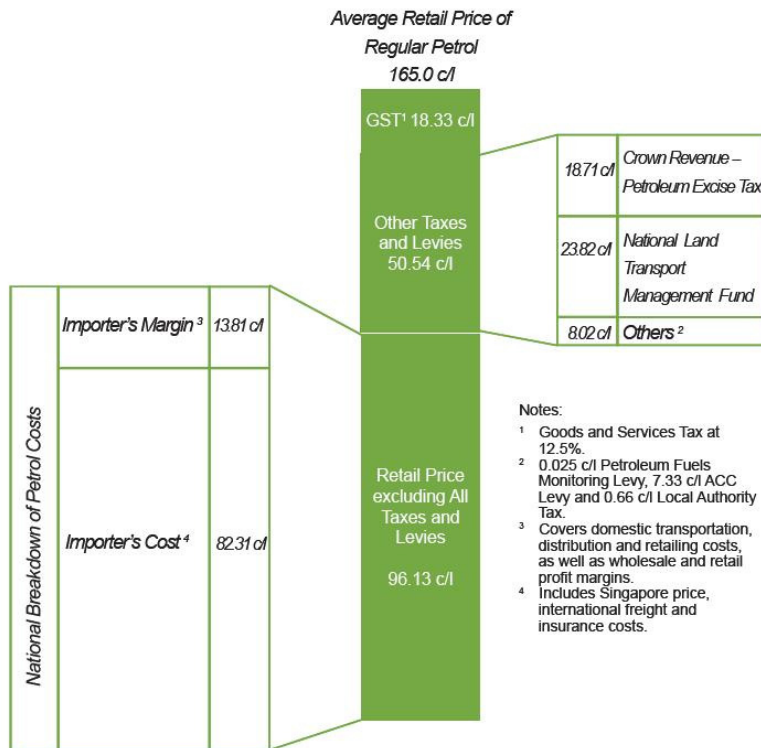
- 뉴질랜드의 유류세는 소비세(Excise Duty)와 사고보상공사 부담금(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Levy), 유류모니터링 부담금(Petroleum Fuels Monitoring Levy), 지방유류세(Local Authority Petroleum Tax)로 구성되어 있음. 여기에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GST: Goods and Services Tax) 12.5%를 부과
- 소비세는 Crown Revenue부문과 National Land Transport Fund(NLTF)로 구성<sup>34)</sup>
  - 휘발유에 대한 소비세인 Crown Revenue는 Customs and Excise Act 1996에 의거해서 부과됨. 육상운송펀드(National Land Transport Fund)는 액화천연가스, 압축천연가스의 소비세와 휘발유 소비세의 55% 등으로 구성됨. 이렇게 유류세로부터 조성되는 NLTF 기금을 활용하여 고효율의 도로운송체계, 운송장비 및 새로운 육상 운송체계의 육성에 활용<sup>35)</sup>
- 사고보상공사 부담금(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Levy)은 재해방지, 재건, 보상법에 따라 징수됨. 현재 7.33 c/l 세율로 휘발유에 과세
  - 디젤용 차량은 뉴질랜드 육상운송(Land Transport New Zealand) 면허에 따라 일반 자동차는 연 \$25, 트럭은 연 \$35 부과
- 유류모니터링 부담금(Petroleum Fuels Monitoring Levy)은 유류의 질, 안정성, 보호의 모니터링과 뉴질랜드의 IEA 관련 비용에 사용됨.
  - 유류모니터링 부담금은 휘발유와 경유에 0.025 c/l 세율로 과세됨. 현재 바이오연료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에 대해서 검토중임.

34) Energy Data File, New Zealand, 2008. 6

35) Land Transport Management Act

- 지방정부법 1974에 따라 지방유류세(Local Authority Petroleum Tax)를 징수하여 지역 재원으로 사용됨.
- 항공연료, 등유, 선박용 경유, 경유(Light Fuel Oil), 중유(Heavy Fuel Oil)는 과세대상이 아님. 1989년 7월 1일 모두 폐지되었음.

[그림 1] 뉴질랜드의 휘발유 가격 분석(2007. 12)



자료 : Energy Data File, New Zealand, 2008. 6

- 2007년 12월 뉴질랜드의 휘발유 평균소매가격은 165.0 c/l <sup>36)</sup>임.
  - 이것은 수입가격(유가에 국제 화물운임과 보험료 포함) 82.31 c/l, 수입업자 마진 13.81 c/l, 유류세 50.54 c/l를 모두 더한 값에 GST 12.5%를 부과한 가격임.

36) NZD=715.97원 2007년 12월 평균 환율

나. 유류세 현황

〈표 33〉 뉴질랜드의 에너지원별 유류세 부과 현황

		소비세 <sup>37)</sup>	사고보상공사 부담금	유류모니터링 부담금	지방유류세	합계	GST
무연 휘발유	보통	42,524 c/l <sup>1)</sup>	7,330 c/l	0,025 c/l	0,66 c/l	50,539 c/l	12,5%
	고급 <sup>2)</sup>	42,524 c/l	7,330 c/l	0,025 c/l	0,66 c/l	50,539 c/l	12,5%
Automotive Diesel <sup>3)</sup>		n.a	-	0,025 c/l	0,33 c/l	0,355 c/l	12,5%
액화석유가스 <sup>4)</sup> (Liquefied Petroleum Gas)		10,4 c/l	n.a	n.a	n.a	10,4 c/l	12,5%
압축천연가스(Compressed Natural Gas)		10,5 c/l	n.a	n.a	n.a	10,5 c/l	12,5%
메탄올(Methanol)		30,20 c/l	n.a	n.a	0,66 c/l	30,86 c/l	12,5%
항공연료, 등유, 선박용 경유, 경유, 중유		n.a	n.a	n.a	n.a	n.a	12,5%

주: 1) 716,94원 per NZD(환율은 2007년 12월 평균)

2) RON 95 이상

3) Diesel 차량에만 적용되는 도로주행세(Road User Charge) 제외

4) 원동기 연료용

자료: Energy Data File, New Zealand, 2008. 6

뉴질랜드 국세청 <http://www.ird.govt.nz/>

15. 스웨덴

가. 개요

□ 스웨덴의 유류세는 에너지세(energy tax)와 이산화탄소세(carbon dioxide tax), 유황세(sulphur tax)로 구성되어 있음. 여기에 25%의 부가가치세 부과(단, 항공용 연료에는 부과하지 않음).

○ 에너지세(Energy tax)와 이산화탄소세(carbon dioxide tax)는 동력이나 가열 목적에 사용되는 연료에 부과<sup>38)</sup>

37) Excise Duty on Motor Spirits

- 유황세(sulphur tax)는 에너지세와 이산화탄소세 과세대상인 대부분 연료의 유황에 부과
  - 토탄(peat fuel), 석탄(carbon fuel), 석유코크스(petroleum coke)와 기타 고체 및 가스성 제품은 30 SEK(3.26EUR)/유황성분 함유량(kg)<sup>39)</sup>
  - 액체연료 즉, 디젤과 난방용 유류는 27 SEK(2.94EUR)/유황성분 함유량의 10%(m<sup>3</sup>).<sup>40)</sup> 단, 무게당 최대 0.05%의 유황이 함유된 유류의 경우 부과하지 않음. 또한 대부분의 경우 무게당 유황함유량이 0.1%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유황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sup>41)</sup>.
  - 만약 정제나 제품의 혼합 혹은 회(灰)로 유황이 감소할 경우 납세자는 유황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제조업 및 농업(상업용 온실재배, 임업, 양식업 포함)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에너지세는 전액 면제하며, 이산화탄소세는 일반세율의 21% 수준 과세
  - 아울러, 에너지 집약형 기업(energy intensive enterprise)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감세 적용
  
- 무연 휘발유(unleaded petrol), 디젤, 특정 대체동력연료는 유황 함유량, 방향족탄화수소(aromatic hydrocarbons) 함유량, 원유 증류 범위에 따라 환경기준을 분류하여 세금을 부과
  
- 환경기준 1은 유황, 벤젠, 방향족탄화수소, 올레핀(olefins), 인(phosphorus)의 함유량, 증기압(vapour pressure)에 따라 무연 휘발유를 분류함.

38) 단, 1리터 이하의 패키지로 거래되는 연료는 에너지세와 이산화탄소세를 부과하지 않음.

39) Taxation of energy in Sweden, Ministry of Finance Sweden, 2008

40) <http://www.skatteverket.se/download/18,61589f801118cb2b7b2800011960/493b13.pdf>

41) Energy Prices & Taxes, 3rd Quarter 2008

〈표 34〉 스웨덴의 휘발유 환경기준 분류

필요요건	환경기준 1 (원동기용)	Alkylate based petrol (배합 연료용)	환경기준 2
RON(Research octane number) <sup>1)</sup> min	95	-	95
MON(Motor octane number) <sup>2)</sup> min	85	-	85
리이드 증기압 (vapour pressure by Reid), max kilopascal	70/95 <sup>3)</sup>	65	70/95 <sup>3)</sup>
리이드 증기압 (vapour pressure by Reid), min kilopascal	45/95 <sup>3)</sup>	50	-
종류 :			
- 70℃, per cent by volume	-	15-42	-
- 100℃, min per cent by volume	47/50 <sup>3)</sup>	46	46
- 100℃, max per cent by volume	-	72	-
- 150℃, min per cent by volume	75	75	75
- 180℃, min per cent by volume	-	-	-
Final boiling point, max °C	205	200	-
올레핀(Olefins), max per cent by volume	13.0	1.0	18.0
방향족탄화수소(Aromatic hydrocarbons), max per cent by volume	35.0	1.0	35.0
벤젠, max per cent by volume	1.0	0.1	1.0
시클로헥산(Cyclohexanes), max per cent by volume	-	2.0	-
n-Hexane, max per cent by volume	-	0.5	-
산소, max per cent by mass	2.7	-	2.7
합산소화합물(Oxygenates) :			
- Methanol, max per cent by volume, stabilising agents must be added	3	-	3
- Ethanol, max per cent by volume, stabilising agents can be necessary	5	-	5
- Isopropyl alcohol, max per cent by volume	10	-	10
- tert-Butyl alcohol, max per cent by volume	7	-	7
- Isobutyl alcohol, max per cent by volume	10	-	10
- Ethers containing five or more carbon atoms per molecule, max per cent by volume	15	-	15
Other oxygenates, max per cent by volume	10	-	10
유황(Sulphur), max milligram per kilogram	10	10 <sup>4)</sup>	10 <sup>4)</sup>
납(Lead), max gram per litre	0.005	0.002	0.005
인(Phosphorus)	non-measurable	-	-
밀도 at 15℃, kilogram per m <sup>3</sup>	-	680-720	-

주: 1) 옥탄가(휘발유의 연료로서의 성능에 관한 품질의 동력학적 측정값)는 고급 휘발유(2호=96 이상)와 보통 휘발유(1호=91 이상)로 구분. RON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럽이 사용함. 북미의 경우 MON(Motor Octane Number)방식으로 측정. 북미 옥탄가 = (MON + RON)/2

- 2) MON Regular : 87-90 (RON : 90~93)
- MON Superior : 91-95 (RON : 94~98)
- MON Supreme : 94-98 (RON : 97~100)

3) 계절에 따라 다르게 적용

4) 2008년 말까지는 유황함유량 최대 50 milligram per kilogram까지 허용

자료: Taxation of energy in Sweden, Ministry of Finance Sweden, 2008, 1

〈표 35〉 스웨덴의 경유 환경기준 분류

필요요건	환경기준 1	환경기준 2	환경기준 3
세탄지수 <sup>1)</sup> (가연성)	50	47	-
세탄가 <sup>2)</sup> (價), mim	51	51	51
밀도, mim kg/m <sup>3</sup> at 15°C	800	800	-
밀도, max kg/m <sup>3</sup> at 15°C	820	820	845
증류 :			
- 끓는점, mim °C	180	180	-
- at 95% 증류액, max °C	320	320	360
방향족탄화수소(Aromatic hydrocarbons), max per cent by volume	5	20	-
다환방향족탄화수소(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max per cent by volume	non-measurable	0,1	-
다환방향족탄화수소(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max per cent by mass	-	-	11
유황(Sulphur), max milligram per kilogram	10	10 <sup>3)</sup>	10 <sup>3)</sup>
지방산메틸에스테르(Fatty acid methyl esters)	5	5	-

주: 1) Cetane index : 석유에 함유되어 있는 기름 모양의 탄화수소

2) Cetane number : 중유 기관용 연료의 발화 성능을 나타낸 지수

3) 2008년 말까지는 유황함유량 최대 50 milligram per kilogram까지 허용

자료: Taxation of energy in Sweden, Ministry of Finance Sweden, 2008, 1

## 나. 유류세 현황

〈표 36〉 스웨덴의 에너지원별 에너지세 · 이산화탄소세

에너지원별	단위	에너지세		이산화탄소세		합계		VAT (25%)	
		SEK	EUR	SEK	EUR	SEK	EUR		
휘발유 (petrol)	환경기준 1 (원동기용)	per litre	2.95	0.32	2.34	0.25	5.29	0.57	25%
	Alkylate based petrol (배합 연료용)	per litre	1.32	0.14	2.34	0.25	3.66	0.39	25%
	환경기준 2	per litre	2.98	0.32	2.34	0.25	5.32	0.57	25%
	기타	per litre	3.68	0.40	2.34	0.25	6.02	0.65	25%

〈표 36〉의 계속

에너지원별		단위	에너지세		이산화탄소세		합계		VAT (25%)
			SEK	EUR	SEK	EUR	SEK	EUR	
석유(oil) · 가스유 (gas oil) · 등유 (kerosene) · 중유 (heavy oil)	환경기준 1 (Marked oil)	per m <sup>3</sup>	764	83.10	2,883	313.57	3,647	396.67	25%
	환경기준 1 (Unmarked oil)	per m <sup>3</sup>	1,277	138.89	2,883	313.57	3,647	452.46	25%
	환경기준 2 (Unmarked oil)	per m <sup>3</sup>	1,530	166.41	2,883	313.57	4,413	479.98	25%
	환경기준 3 (Unmarked oil)	per m <sup>3</sup>	1,663	180.88	2,883	313.57	4,546	494.45	25%
LPG	차량, 선박, 항공기	per 1,000kg	0	0	1,584	172.29	1,584	172.29	25%
	기타 용도	per 1,000kg	150	16.31	3,033	329.89	3,183	346.20	25%
Natural gas	차량, 선박, 항공기	per 1,000m <sup>3</sup>	0	0	1,282	139.44	1,282	139.44	25%
	기타 용도	per 1,000m <sup>3</sup>	247	26.86	2,159	234.83	2,406	261.69	25%

주: 1) 142.08원 per SEK

2) 1304.78원 per EUR (환율은 2007년 10월 1일 평균)

자료: Taxation of energy in Sweden, Ministry of Finance Sweden, 2008, 1

□ Unmarked diesel은 모든 차량(자동차, 버스, 화물용 자동차, 트랙터, 굴착기, 트럭 및 기타 모든 ORV<sup>42)</sup>)과 레저용 개인선박 원동기 추진용에 사용됨.

○ 스웨덴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98%) 디젤은 환경기준 1에 해당됨.

○ Marked oil은 stationary 원동기, 선박, 난방용이며 Marked oil이 제조업, 농업(상업적 원예 포함)에 사용될 때는 에너지세는 완전 면제이며 이산화탄소세는 일반세율의 21% 수준 과세

42) off-road vehicles

〈표 37〉 스웨덴의 에너지별 평균가격과 유류세

에너지원별		단위	분기	세전 가격	에너지 세 등	VAT (25%)	세금 합계	세포함 가격
저유황유 (Low Sulphur Fuel Oil)	산업용	SEK/1,000kg	3Q2008	5,160	3,966	-	3,966	9,126
경유 (Light Fuel Oil)	산업용	SEK/1,000 litres	2Q2008	5,855	605	-	605	6,460
	가정용			6,521	3,647	2,542	6,159	12,710
Automotive Diesel	상업용	SEK/litre	2Q2008	7,103	4,160	-	4,160	11,263
	비상업용			7,103	4,160	2,816	6,976	14,079
고급 무연 휘발유	98 RON	SEK/litre	2Q2008	5,591	5,290	2,720	8,010	13,601
	95 RON			5,374	5,290	2,666	7,956	13,330

주: 1) 경유(Light Oil) 원유를 증유로 얻을 수 있는 비점 200℃ 이상, 인화점50℃ 이상, 90% 유출온도 350℃ 이하의 연료유를 말함. 디젤엔진용 연료로서 사용됨.

2) RON(Research Octane Number)으로 옥탄가(가솔린의 연료로서의 성능에 관한 품질의 동력학적 측정값)를 측정하는 우리나라와 유럽의 경우 고급 휘발유(2호=96이상)와 보통 휘발유(1호=91이상)로 구분

3) 170.26원 per SEK(환율은 2008년 4월~6월 평균)

4) 169.36원 per SEK(환율은 2008년 7월~9월 평균)

자료: Energy Prices & Taxes, 3rd Quarter 2008

## 16. 핀란드

### 가. 개요

□ 핀란드의 유류세는 기본세(Basic tax), 탄소세(Carbon surtax)와 전략비축료(strategic stockpile fee)로 종량세로 이루어져 있음. 여기에 22%의 부가가치세 부과

○ 기본세는 휘발유, 경유, 항공유에 부과

○ 탄소세는 휘발유, 경유, 중유, 엔진연료, 항공유, 천연가스, 톨유(tall-oil), 전력, 석탄에 부과

-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대표적인 환경세임

○ 전략비축료(strategic stockpile fee)는 전시 상황에 따른 에너지 비축의 발생비용충당과 안정공급의 확보를 위해 액체연료(경유, 중유 등)와 천연가스, 전력, 석탄에 부과

- 아래 열거된 연료는 전략비축료(strategic stockpile fee) 등을 면제<sup>43)</sup>
  - 주(州) 전략비축 저장용 연료
  - 석유 정제 과정에 사용된 연료
  - 원자재, 보조원료, 또는 재화의 주원료로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연료
  - 전력생산용 연료, 항공연료, 바이오연료<sup>44)</sup>, 액체가스
  
- 에너지 집약형 기업(energy intensive enterprise)은 회사가 부담한 유류세 기본세의 85%까지 환급받을 수 있음. 단, €50,000까지만 환급신청 가능
  - 단,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안에 회사의 주소지 Customs District에서 가능
  
- 전문적인 온실 경작 농업인은 경유와 중유의 기본세를 온실 소재지의 Customs District에서 환급받을 수 있음<sup>45)</sup>. <http://www.tulli.fi/fi/index.jsp?language=fi>

## 나. 유류세 현황

〈표 38〉 핀란드의 에너지원별 유류세 부과 현황

에너지원별		세전가격 <sup>2)</sup>	basic tax	carbon surtax	strategic stockpile fee	세금합계	VAT (22%)	세포함가격
휘발유	리포몰레이티드 (reformulated) <sup>1)</sup> 무황	€0,664/ℓ	€0,5724/ℓ	€0,0478/ℓ	€0,0068/ℓ	€0,627/ℓ	22%	€1,574/ℓ
	기타	-	€0,5989/ℓ	€0,0478/ℓ	€0,0068/ℓ	€0,6535/ℓ	22%	-
Diesel oil	무황	€0,816/ℓ	€0,3067/ℓ	€0,0538/ℓ	€0,0035/ℓ	€0,364/ℓ	22%	€1,439/ℓ
	기타	-	€0,3332/ℓ	€0,0538/ℓ	€0,0035/ℓ	€0,3905/ℓ	22%	-
경유(Light fuel oil)		€0,753/ℓ	€0,0294/ℓ	€0,0541/ℓ	€0,0035/ℓ	€0,097/ℓ	22%	€1,025/ℓ
중유(Heavy fuel oil)		€424/ton	x	€0,0642/kg	€0,0028/kg	€0,067/kg	22%	€599/ton
항공용 휘발유		-	€0,3754/ℓ	€0,0478/ℓ	€0,0068/ℓ	€0,497/ℓ	22%	-
톨유(Tall-oil)		-	€0,0670/kg	x	x	€0,0670/kg	22%	-
천연가스		€24,38/MWh	x	€2,016/MWh	€0,084/MWh	€2,10/MWh	22%	€32,30/MWh

주: 1) 대기오염의 감소를 목표로 조성(組成)을 대폭 변경한 휘발유(미국에서는 1990년의 대기 정화법 개정에 따라 함(含)산소화합물 등을 배합한 것이 제조되고 있음).

2) 1386,80원 per EUR(환율은 2008년 1월 평균)

자료: Energy excise duties, No 21. National Board of Customs, 2008. 4

43) Energy excise duties, No 21, National Board of Customs, 2008. 4

44) 디젤엔진으로 제조되는 난방용 바이오 연료. 운송 연료로 사용되는 바이오 연료는 과세대상

45) Custom's Customer Bulletin No. 2, <http://www.tulli.fi/fi/index.jsp?language=fi>

- 중유와 천연가스는 기본세를 부과하지 않고, 톨유는 탄소세와 전략비축료를 부과하지 않음. 세포함가격 대비 유류세 비중(부가가치세 22% 포함)은 리포물레이티드 휘발유(무황) 48.6%, Diesel oil(무황) 30.9%, 경유 11.5%, 천연가스 7.9%로 나타남.

## 17. 아일랜드

### 가. 개요

- 아일랜드는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비교적 낮은 유류세율을 부과하고 있음. 유류세는 NORA(National Oil Reserves Agency)<sup>46)</sup> 부담금과 소비세(Excise Duty)인 종량세로 이루어져 있음.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아일랜드는 NORA<sup>47)</sup>의 운영자금을 위해 석유생산물에 대하여 리터당 0.01유로(1€=1831.35원, 2008년 12월 1일 환율) 부과
  - NORA부담금은 무연휘발유, Automotive Diesel, 연료유에 부과하며, 천연가스, 항공연료, 선박연료에는 부과하지 않음<sup>48)</sup>.
- 무연 휘발유와 Automotive Diesel은 21%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며, 나머지는 13.5% 세율을 부과
  - 산업용, 전력생산, 상업용 Automotive Diesel은 부가가치세 전액 환급됨. 종전에 석유류의 부가가치세율은 21%<sup>49)</sup>를 적용받았음. 그러나 2008년 12월 1일 이후 21%를 적용받던 품목은 21.5%로 세율이 인상되었음.

46) <http://www.nora.ie/function/function,397,397.html>

47) NORA는 재무부로부터 다른 기금을 전혀 받지 않음. 100% 유류에 대한 NORA부담금으로 운영됨.

48) <http://www.dcenr.gov.ie/Energy/Oil+Supply+Division/The+NORA+Levy.htm>

49) 자동차, 석유, 카펫, 가구, 성인 의류 등(요식업, 건설업, 고체연료 등은 부가가치세율 13.5%임)

□ 천연가스의 경우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산업용은 부가가치세 13.5% 전액 환급으로 유류세 부담이 없으며 가정용은 부가가치세 13.5%만 부과함.

□ 세포함가격 대비 유류세 비중(부가가치세 21% 포함)은 무연휘발유 55.6%, Automotive Diesel(비상업용) 49.3%로 나타남.

### 나. 유류세 현황

〈표 39〉 아일랜드 에너지원별 유류세 부과 현황

		세전가격	NORA 부담금 <sup>1)</sup>	소비세 (Excise Duty)	부가가치세 (VAT)	세금합계 <sup>2)</sup>	세포함가격 <sup>3)</sup>
무연 휘발유		€0.525/ℓ	€0.01/ℓ	€0.44268/ℓ	21%	€0.658	€1.183/ℓ
Automotive Diesel	상업용	€0.602/ℓ		€0.36805/ℓ	21% (전액환급)	€0.37805	€0.98/ℓ
	비상업용	€0.601/ℓ					
경유 (Light Fuel Oil)	산업용	€615.27/1000ℓ		€47.36/1000ℓ	13.5% (전액환급)	€57.36	€672.63/1000ℓ
	가정용	€688.97/1000ℓ					
연료유 (Fuel Oil)	산업용 (고유황)	€270.12/t		€14.78/t	13.5% (전액환급)	€24.78	€294.9/t
	전력생산용 (중유)	€309.82/t	13.5% (전액환급)				
천연가스 <sup>4)</sup> (National Gas)	산업용	€380	X <sup>5)</sup>	0	13.5% (전액환급)	0	€380
	가정용	€545		0	13.5%	€73.58	€618.58
	전력생산용	Confidential		0	13.5% (전액환급)	Confidential	Confidential

주: 1) 아일랜드는 National Oil Reserves Agency(NORA)의 운영자금을 위해 석유생산품에 대하여 리터당 0.01유로(1센트) 부과

2) 산업용 및 전력생산용 에너지와 상업용 경유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모두 환급되므로 세금합계에서 제외함.

3) 산업용 및 전력생산용 에너지와 상업용 경유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모두 환급되므로 세포함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임.

4) 천연가스 가격은 per 107 Kcal GCV임.

5) X = Not Applicable

6) 11,396.39원 per EUR (환율은 2008년 2월 평균)

자료: 1. Sustainable Energy Ireland(www.sei.ie)

2. 기획재정부 내부자료

## 18. 네덜란드

### 가. 개요

- 네덜란드의 유류세는 종량세이며, 환경세의 일종으로 부과 목적을 CO<sub>2</sub>배출 저감과 에너지 소비의 감소에 두고 있음<sup>50)</sup>.
  - 환경세법(Environmental Taxes Act)에서 지하수세(groundwater tax), 수도세(tap water tax), 쓰레기세(waste tax), 석탄세(coal tax), 패키지세(packaging tax)와 함께 에너지세(energy tax)를 규정하고 있음.
- 대부분의 석유제품에 소비세(excise duty), 원유비축부담금(stock levy mineral oils), 에너지세(energy tax)로 구성된 유류세 이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
  - 가정용과 비상업용 모든 에너지원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19%의 부가가치세율 적용
  - 그러나 상업용·수송용 경유와 산업 및 전력발전용 에너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줌.
- 휘발유는 무연(unleaded)과 유연(leaded)에 따라 소비세율이 다르며, 경유와 등유(무황, 유황, 항공기용, 보통)는 1,000ℓ당 소비세율이 동일함.
- 원유비축부담금은 휘발유, 등유, 경유에 €5.30/1,000ℓ를 부과하고 LPG에 €5.30/1,000kg를 부과함.
  - 산업용 중질연료유에 대해서는 2001년 4월 이후 원유비축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음.
- 에너지세는 도로사용용 이외의 기타 및 레저 항해용, 항공기용의 등유·경유·LPG(liquefied petroleum gas)와 천연가스(natural gas)에만 부과

50) <http://www.minfin.nl/dsresource?objectid=58942&type=pdf>

나. 유류세 현황

〈표 40〉 네덜란드의 에너지원별 유류세 부과 현황<sup>1)</sup>

		소비세 (excise duty)	원유비축부담금 (stock levy mineral oils)	에너지세 (energy tax)	VAT
휘발유	유연	€755.90/1,000ℓ	€5.30/1,000ℓ	-	19%
	무연	€678.79/1,000ℓ			19%
경유	무황, 고급	€370.75/1,000ℓ	€5.30/1,000ℓ	€165.10/1,000ℓ <sup>2)</sup>	19%
	유황	€380.91/1,000ℓ			19%
	항공기용	€209.58/1,000ℓ			19%
	보통	€46.56/1,000ℓ			19%
등유	무황, 고급	€370.75/1,000ℓ	€5.30/1,000ℓ	€163.74/1,000ℓ <sup>2)</sup>	19%
	유황	€380.91/1,000ℓ			19%
	항공기용	€209.58/1,000ℓ			19%
	보통	€46.56/1,000ℓ			19%
중유		€32.51/1,000kg	-	-	19%
LPG		€96.21/1,000kg	€5.30/1,000kg	€195.48/1,000kg <sup>2)</sup>	19%

주: 1) 1244.92원 per EUR (환율은 2007년 6월 평균)

2) 도로사용용 이외의 기타 및 레저 항해용, 항공기용에만 부과

자료: Excise and energy rates NL(2007. 6), 네덜란드 재무부(<http://www.minfin.nl/english>)

□ 휘발유의 소비세는 무연, 유연 순서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며, 경유·등유의 소비세는 유황, 무황, 항공기용, 보통휘발유 순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음.

〈표 41〉 네덜란드의 천연가스(natural gas) 에너지세 부과 현황

천연가스 종류별	에너지세 (energy tax)
압축천연가스(Compressed Natural Gas)	€0.03/m <sup>3</sup>
천연가스(with a maximum combustion value of 35,17 mega joule)	
• ~5,000m <sup>3</sup>	€0.1531/m <sup>3</sup>
• 5,000m <sup>3</sup> ~170,000m <sup>3</sup>	€0.1342/m <sup>3</sup>
• 170,000m <sup>3</sup> ~1,000,000m <sup>3</sup>	€0.0372/m <sup>3</sup>
• 1,000,000m <sup>3</sup> ~10,000,000m <sup>3</sup>	€0.0118/m <sup>3</sup>
• 1,000,000m <sup>3</sup> 초과하는 비상업용	€0.0110/m <sup>3</sup>
• 1,000,000m <sup>3</sup> 초과하는 상업용	€0.0078/m <sup>3</sup>

〈표 41〉의 계속

천연가스 종류별	에너지세 (energy tax)
원예용 천연가스 (with a maximum combustion value of 35.17 mega jou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00m<sup>3</sup></li> <li>• 5,000m<sup>3</sup>~170,000m<sup>3</sup></li> <li>• 170,000m<sup>3</sup>~1,000,000m<sup>3</sup></li> <li>• 1,000,000m<sup>3</sup>~10,000,000m<sup>3</sup></li> <li>• 1,000,000m<sup>3</sup> 초과하는 상업용</li> </ul>	€0.1412/m <sup>3</sup> €0.02245/m <sup>3</sup> €0.01880/m <sup>3</sup> €0.0118/m <sup>3</sup> €0.0078/m <sup>3</sup>
furnace gas, coke oven gas, coal gas en refinery gas	€129.14/1,000GJ
KV-gas	€510.02/1,000GJ

주: 1244.92원 per EUR (환율은 2007년 6월 평균)

자료: Excise and energy rates NL(2007. 6), 네덜란드 재무부(<http://www.minfin.nl/english>)

- 네덜란드 유류세의 특징은 천연가스로서 사용량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하고 있음.  
 등유 · 경유 · LPG는 1,000ℓ(1,000kg)당 에너지세율이 동일하나 천연가스(natural gas)는 사용량에 대해 에너지세를 차등 부과함.
- 일반 천연가스(최대 연소값이 35.17 mega joule)와 원예용으로 쓰이는 천연가스는 사용량이 많을수록 낮은 에너지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특징
  - 원예용으로 쓰이는 천연가스가 동일 사용량 수준에서 적용되는 세율이 더 낮지만 사용량이 100만m<sup>3</sup> ~ 1,000만m<sup>3</sup>와 100만m<sup>3</sup>를 초과하는 상업용에 적용되는 세율은 동일함.

## 19. 헝가리

### 가. 개요

- 헝가리의 유류세는 종량세로 대부분의 석유제품에 수입세(Revenue Tax) 또는 에너지세(energy tax)로 부과되며, 이외에 종가세로 2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
- 수입세는 휘발유, 경유, LPG에 부과함.
  - 에너지세는 천연가스와 전기에만 부과함<sup>51)</sup>.

- 전력생산용 천연가스는 에너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 헝가리 의회는 2008년 11월에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8% 세율의 Special Energy Tax(SET)를 통과시킴<sup>52)</sup>. 저소득 가구의 지역난방 비용의 인상에 따라 서 헝가리의 에너지(석유, 천연가스, 전기 등) 공급 및 거래 회사의 이익에 부과하는 에너지세로 'Robin Hood Tax'로 일컬음.
  - 그러나, 최종 초안에 따르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운송) 회사,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업, 50MW 이하의 발전소, 가계부문 천연가스 공익설비 제공업자는 SET의 면제가 가능할 것임.
  - 헝가리 정부는 SET로 해마다 30 billion forints의 조세수입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것을 지역난방 가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될 계획임.
  - 헝가리 정부는 이미 2008년도에 저소득 가구의 지역 난방비 보조금으로 3 billion forints를 지출했음.
  - 그러나, 기업의 법인세 과표에 8%를 부과하는 것이라 에너지 기업들의 반발이 있음.

## 나. 유류세 현황

〈표 42〉 헝가리의 에너지원별 유류세 부과 현황

	세전가격	수입세 (Revenue Tax)	에너지세 (Energy Tax)	VAT	세포함가격
휘발유	156.42HUF/ℓ	103.5 HUF/ℓ	-	20%	311.904HUF/ℓ
Automotive Diesel	191.97HUF/ℓ	85 HUF/ℓ	-	20%	332.36HUF/ℓ
천연가스	가정용	102.7 HUF/m <sup>3</sup>	-	20%	123.24HUF/m <sup>3</sup>
	상업용	91.37 HUF/m <sup>3</sup>	-	20%	111.29HUF/m <sup>3</sup>
LPG	129.18HUF/ℓ	25.87HUF/ℓ	-	20%	186.06HUF/ℓ

주: 6.92원 per HUF (환율은 2008년 7월 평균)

- 자료: 1. 헝가리 재무부(<http://www2.pm.gov.hu/web/home.nsf/frames/cimlap>), 운송·통신·에너지부 ([www.khem.gov.hu](http://www.khem.gov.hu))  
 2. 기획재정부 내부자료

51) [http://www.magyarorszag.hu/english/keyevents/a\\_vallalk/a\\_adopenz/a\\_vallalkadok/a\\_energiaado20080425.html](http://www.magyarorszag.hu/english/keyevents/a_vallalk/a_adopenz/a_vallalkadok/a_energiaado20080425.html)

52) Hungary's Parliament, 2008. 11

- 천연가스의 경우 수입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상업용 천연가스는 에너지세 1.37HUF/m<sup>3</sup>를 부과함.
- LPG는 에너지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입세 25.87HUF/ℓ를 부과함.
- 세포함가격 대비 유류세 비중(부가가치세 20% 포함)은 휘발유 49.86%, Automotive Diesel은 42.2%으로 나타남.

## 20. 슬로바키아

### 가. 개요

- 슬로바키아의 유류세는 종량세로서 대부분의 석유제품에 개별소비세(Excise Tax)를 부과
  - 개별소비세 이외에 19%의 부가가치세를 유류에 부과함.
- Automotive Diesel은 SKK14.5/ℓ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만 산업용, 공공 운송 및 재화의 운송에 사용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줌.
-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sup>53)</sup>.
  - Danube 강에서 사람 및 화물을 운송하는 배에 이용하는 연료
  -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기술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연료
  - 고로(高爐)에서 화학작용의 감소 과정에 추가하는 연료
  - 기타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연료

53) [http://www.finance.gov.sk/en/Documents/1\\_Acresar\\_redaktorov/Fuleova/Mineral\\_oil\\_98\\_2004.pdf](http://www.finance.gov.sk/en/Documents/1_Acresar_redaktorov/Fuleova/Mineral_oil_98_2004.pdf)

나. 유류세 현황

〈표 43〉 슬로바키아의 에너지원별 유류세 부과 현황

		단위	분기	세전가 격	개별소 비세(Exc ise Tax)	VAT	세금 합계	세포함 가격	유류세/ 세포함 가격
고급 무연 휘발유	98 RON	SKK/ℓ	1Q2008	19.47	15.5	19%	22.15	41.62	53.22%
	95 RON		2Q2008	18.57	15.5	19%	21.97	40.55	54.18%
경유(Automotive Diesel)	비상업용	SKK/ℓ	2Q2008	21.92	14.5	19%	21.42	43.34	49.42%
	상업용		2Q2008	21.92	14.5	-	14.5	36.42	39.81%
천연가스 (natural gas)	가정용	SKK/10 <sup>7</sup> Kcal GCV	2Q2008	14,100	-	19%	2,679	16,779	15.97%
자동차용 LPG	비상업용	SKK/ℓ	2Q2008	14.3	4.26	19%	7.79	22.09	35.26%

주: 1) 43.63원 per SKK(환율은 2008년 1~3월 평균)

2) 50.74원 per SKK(환율은 2008년 4~6월 평균)

자료: Energy Prices & Taxes, 3rd Quarter 2008

□ 가정용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고, 상업용 경유(Automotive Diesel)는 19%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음. 세포함가격 대비 유류세 비중(부가가치세 19% 포함)은 고급 무연휘발유(98RON) 53.22%, 상업용 경유 39.81%, 가정용 천연가스 15.9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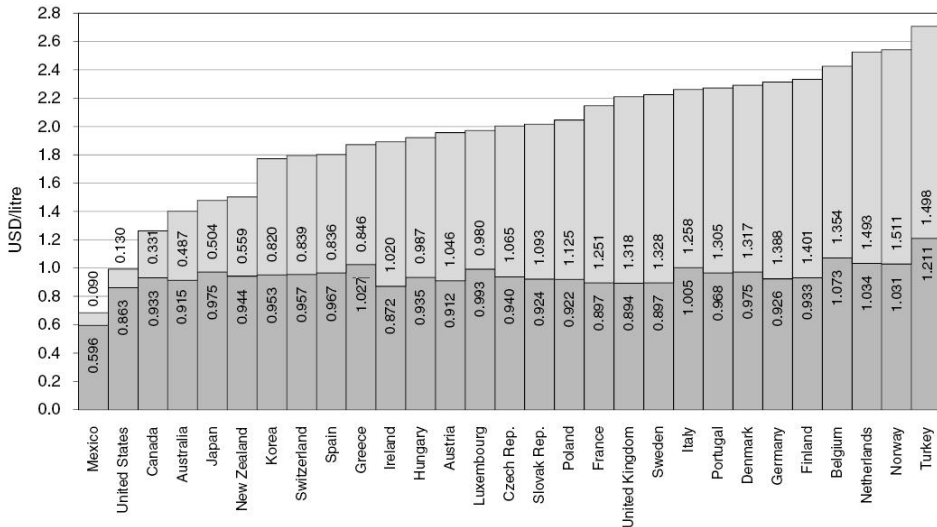
## IV. 국제비교

□ 앞에서 살펴본 유류세 제도 및 현황은 각 나라의 유종별 과세기준, 화폐단위 등의 차이로 객관적이고 통일된 국제비교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세포함가격 대비 유류세 비중, 유종별 유류세율, 유류세 구성 세목, 유류세 감면 내용 등의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IEA의 Energy Prices & Taxes(3rd Quarter 2008)의 자료를 통해 살펴보고자 함.

### 1. 최종가격 대비 유류세 비중<sup>54)</sup>

〈표 44〉 OECD 국가의 무연휘발유 최종가격과 유류세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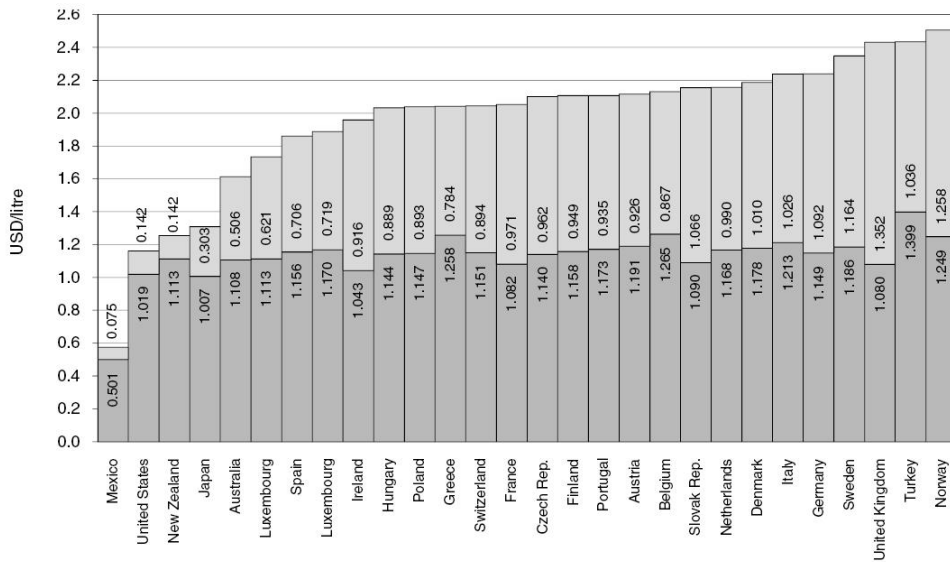


54) 1759.40원 per EUR(환율은 2008년 10월 평균)

□ 우리나라의 무연휘발유 가격은 1.773달러/ℓ로 29개 국가 중에서 7위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최종가격 대비 무연휘발유 유류세 비중은 미국과 멕시코가 13.1%로 가장 낮으며 OECD의 최종가격 대비 유류세 평균이 약 48.7%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46.2%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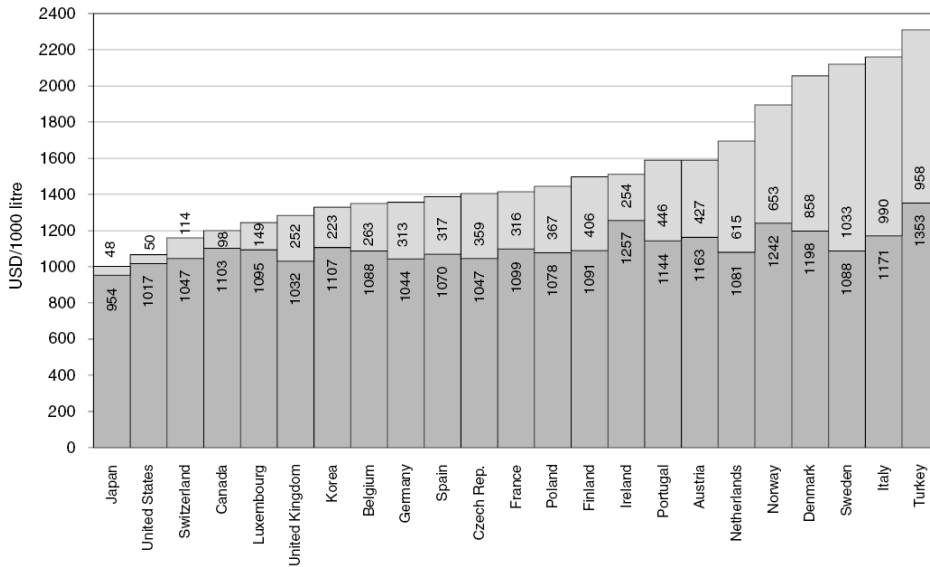
〈표 45〉 OECD 국가의 Automotive Diesel 최종가격과 유류세 비중



□ 미국의 Automotive Diesel 최종가격은 Automotive Diesel 최종가격 대비 유류세 비중이 가장 작은 나라는 뉴질랜드로 11.3%이며, 가장 큰 나라는 미국으로 55.6%를 보이고 있음.

○ 그림에 나와 있진 않지만 현행 제도에서 우리나라는 최종가격 대비(1232.37원) 유류세(644.74원) 비중은 47.7%를 나타내고 있음.

〈표 46〉 OECD 국가의 경유(Light Fuel Oil) 최종가격과 유류세 비중



□ 우리나라의 경유(Light Fuel Oil) 가격은 1,330달러/1,000ℓ로 이 중 유류세는 일본, 미국, 캐나다, 스위스, 룩셈부르크에 이어 223달러(최종가격 대비 16.7%)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 유류세율 비교

〈표 47〉 에너지원별 유류세 비교(가정용)

국가	VAT <sup>1)</sup> (%)				Excise Tax Amounts <sup>2)</sup>			
	LFO <sup>3)</sup>	Auto Diesel	무연 휘발유 <sup>3)</sup>	천연 가스	LFO <sup>3)</sup>	Auto Diesel	무연 휘발유 <sup>3)</sup>	천연 가스
호주	..	10,0	10,0	..	..	0,381	0,381	..
오스트리아	20,0	20,0	20,0	20,0	109,4	0,386	0,485	69,34
벨기에	21,0	21,0	21,0	..	18,49	0,318	0,597	..
캐나다	5,0	..	5,0	5,0	41,00	..	0,274	..
체코	19,0	19,0	19,0	19,0	660,0	9,950	11,84	-
덴마크	25,0	25,0	25,0	25,0	2,137	2,734	4,103	2,242
핀란드	22,0	22,0	22,0	22,0	87,00	0,364	0,627	22,00

〈표 47〉의 계속

국가	VAT <sup>1)</sup> (%)				Excise Tax Amounts <sup>2)</sup>			
	LFO <sup>3)</sup>	Auto Diesel	무연 휘발유 <sup>3)</sup>	천연 가스	LFO <sup>3)</sup>	Auto Diesel	무연 휘발유 <sup>3)</sup>	천연 가스
프랑스	19.6	19.6	19.6	17.7	56.60	0.428	0.606	-
독일	19.0	19.0	19.0	·	61.35	0.470	0.655	·
그리스	19.0	19.0	19.0	9.0	260.0	0.293	0.350	-
헝가리	×	20.0	20.0	20.0	×	88.01	106.5	-
아일랜드	13.5	21.0	21.0	13.5	47.36	0.368	0.443	-
이탈리아	20.0	20.0	20.0	·	403.2	0.417	0.564	·
일본	5.0	5.0	5.0	5.0	-	26.40	45.40	-
<b>한국</b>	<b>10.0</b>	<b>10.0</b>	<b>10.0</b>	<b>10.0</b>	<b>103,500</b>	<b>470.95</b>	<b>670.2</b>	<b>72,221</b>
룩셈부르크	12.0	15.0	15.0	6.0	10.00	0.302	0.462	-
멕시코	·	15.0	15.0	15.0	·	-	-	-
네덜란드	19.0	19.0	19.0	19.0	220.16	0.413	0.697	184.87
뉴질랜드	·	12.5	12.5	12.5	·	0.0036	0.505	20.50
노르웨이	25.0	25.0	25.0	×	1395.0	3.850	5.100	×
폴란드	22.0	22.0	22.0	22.0	233.0	1.145	1.648	-
포르투갈	12.0	21.0	21.0	5.0	176.18	0.364	0.583	-
슬로바키아	·	19.0	19.0	19.0	·	14.50	15.50	-
스페인	16.0	16.0	16.0	16.0	84.71	0.302	0.396	-
스웨덴	25.0	25.0	25.0	·	3,647	4.160	5.290	·
스위스	7.6	7.6	7.6	7.6	32.90	0.774	0.735	33.00
터키	18.0	18.0	18.0	18.0	760.5	0.835	1.363	-
영국	5.0	17.5	17.5	5.0	96.90	0.504	-	-
미국	·	·	·	·	·	·	·	·

주: 1) GST(캐나다, 뉴질랜드), 소비세(일본)

2)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유류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전체이며 단위는 자국통화(유럽통화연맹은 유로)

3) Light Fuel Oil(한국과 일본은 등유)

4) 한국, 일본, 캐나다, 호주는 보통 무연 휘발유/다른 모든 나라는 고급 무연 휘발유

5) ·(not available), -(nil), ×(not applicable), c(confidential)

자료: Energy Prices & Taxes, 3rd Quarter 2008

□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별(가정용) 유류세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유류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는 등유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천연가스, 무연 휘발유 순임. 부가가치세는 10%로 모든 에너지가 같음.

○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은 에너지원별로 다른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표 48〉 에너지원별 유류세 비교(산업용)

국가	VAT <sup>1)</sup> (%)	Excise Tax Amounts <sup>2)</sup>				
	HFO <sup>3)</sup>	LFO <sup>4)</sup>	Automotive Diesel	고유황 연료유	저유황 연료유	천연 가스
호주	..	..	..	..	..	..
오스트리아	-	109.4	0.386	..	67.70	..
벨기에	-	18.50	0.318	×	15.00	-
캐나다	5.0	43.60	0.208	26,680	..	..
체코	-	660.0	9.950	472.0	472.0	356.0
덴마크	-	222.3	2.734	..	365.2	-
핀란드	-	87.00	0.364	..	67.00	22.00
프랑스	-	56.60	0.428	18.50	18.50	13.84
독일	-	61.40	0.470	..	25.00	..
그리스	-	260.0	0.293	19.00	19.00	..
헝가리	-	..	88.01	..	6,925	2,345
아일랜드	-	47.40	0.368	13.63	..	-
이탈리아	-	403.2	0.417	..	31.39	..
일본	5.0	-	26.40	-	-	..
<b>한국</b>	<b>10.0</b>	<b>103,500</b>	<b>..</b>	<b>20,703</b>	<b>20,703</b>	<b>72,221</b>
룩셈부르크	×	21.00	0.302	×	..	..
멕시코	-	-	-	-	..	-
네덜란드	-	220.2	0.413	×	32.11	..
뉴질랜드	-	-	0.004	-	..	19.50
노르웨이	..	1,395.0	3.850	×	..	×
폴란드	-	233.0	1.145	60.00	60.00	-
포르투갈	-	..	0.364	×	15.30	-
슬로바키아	-	-	14.50	×	-	-
스페인	..	84.70	0.302	..	15.00	-
스웨덴	-	605	4.160	×	3,966	..
스위스	-	32.9	0.774	×	4.70	33.0
터키	18.0	..	0.835	204.0	..	25.1
영국	-	96.90	0.504	×	94.20	5.42
미국	..	..	..	..	..	..

주: 1) GST(캐나다, 뉴질랜드), 소비세(일본)

2)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유류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전체이며 단위는 자국통화(유럽통화연맹은 유로)

3) Heavy Fuel Oil

4) Light Fuel Oil(한국과 일본은 등유)

5) ..(not available), -(nil), ×(not applicable), c(confidential)

자료: Energy Prices & Taxes, 3rd Quarter 2008

- 우리나라의 산업용 유류는 가정용 등유, 천연가스와 동일하게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음. 고유황연료유와 저유황연료유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유류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는 동일함.
- 대부분의 나라가 산업용 중유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10%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3. 국가별 유류세 구성세목 비교

〈표 49〉 국가별 유류세 구성세목 비교

국가	유류세 구성 세목	비 고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소비세(Excise Tax)</li> <li>• 유출지하저장탱크기금조성세금(Leaking Underground Storage Tank Trust Fund Tax : LUST tax)</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소비세는 연방, 지방 별도 부과</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유 및 석탄세(Petroleum and Coal tax)</li> <li>• 휘발유세(Aviation fuel tax)</li> <li>• 항공유세(Gasoline tax)</li> <li>• 석유가스세(LPG tax)</li> <li>• 자동차용디젤(Light oil delivery tax)</li> <li>• 지방도로세(Local road tax)</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안정정책 추진</li> <li>• 환경유지정책 추진</li> <li>• 에너지효율정책 추진</li> </ul>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소비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 완화와 에너지 공급 안정을 위해 유류에 최소한의 친환경연료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li> </ul>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소비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조세정책</li> </ul>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류세</li> <li>• 자원세</li> </ul>	
덴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세</li> <li>• 이산화탄소세</li> <li>• 유황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조세정책</li> </ul>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소비세</li> <li>• 이산화탄소세</li> <li>• 유황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류세(개별소비세, 이산화탄소세, 유황세)는 일종의 환경세임</li> </ul>
스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세</li> <li>• 이산화탄소세</li> <li>• 추가세(incentive tax on Sulphur)</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조세정책</li> <li>• 기후기금(Climate Cent)</li> <li>• 긴급기금(Emergency Fund)</li> </ul>

〈표 49〉의 계속

국가	유류세 구성 세목	비 고
오스트리아	• 광물유류세 • 긴급저장비용	-
포르투갈	• 개별소비세	-
프랑스	• 개별소비세	-
영국	• 개별소비세(탄화수소세) • 기후변화세	• 기후변화세(환경세)
캐나다	• 개별소비세 • 지방세 • 탄소세(Carbon Tax)	• 친환경조세정책
뉴질랜드	• 개별소비세 • 지방유류세(Local Authority Petroleum Tax)	• 사고보상공사 부담금(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Levy) • 유류모니터링 부담금(Petroleum Fuels Monitoring Levy)
스웨덴	• 에너지세 • 이산화탄소세 • 유황세	• 환경기준 분류에 따라 유류세 부과
핀란드	• 기본세(Basic Tax) • 탄소세(Carbon Surtax) • 전략비축료(Strategic Stockpile Fee)	-
아일랜드	• 개별소비세(Excise Duty)	• NORA 부담금(National Oil Reserves Agency)
네덜란드	• 개별소비세(Excise Duty) • 에너지세(energy tax)	• 친환경조세정책 • 원유비축부담금(stock levy mineral oils)
헝가리	• 수입세(Revenue Tax) • 에너지세(Energy Tax)	-
슬로바키아	• 개별소비세	-

□ 국가별 유류세 구성세목을 살펴보면 유류에 대해서 개별소비세로서 과세하며, 몇몇 국가는 친환경 조세정책에 따라 이산화탄소세, 유황세, 에너지세 등으로 추가로 과세하고 있음. 여기에 부가가치세(GST: 캐나다·뉴질랜드, 소비세: 일본)를 과세함.

○ 유류세를 인하하는 나라는 드물며, 오히려 유류세를 환경 개선, 기후 변화, 고유가 등을 염두에 두고 유류세를 인상하여 '환경친화적 에너지 생성'과 '생태적 전환'을 위한 재원으로 쓰는 것이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선진국의 추세임.

## V. 결 론

- 최근 국제 원유가격의 급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유류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하여 유류비로 인한 가계부담 증가와 생산원가 상승 등 산업생산성의 둔화로 인한 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는 나아가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국민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이에 본 보고서는 주요국의 유류세 제도를 소개하고, 국가별 최종가격 대비 유류세 비중을 살펴보았음.
  - 그러나 고유가와 관련된 정책대안을 수립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논의되고 있지 못함. 따라서 향후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본 보고서는 2008년도의 국제적인 고유가에 따라서 각국의 유류세 정책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유류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됨.
  
- 구체적으로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유류세 제도 및 세율을 정리해 보았고, 제Ⅲ장은 주요국의 유류세 제도 및 세율, 제Ⅳ장에서는 유류세 국제비교를 통해 각국의 최종가격 대비 유류세 비중을 분석하여 보았음.
  
- IEA의 Energy Prices&Taxes(3rd Quarter 2008)를 통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국 20개의 유류세 구성세목과 세율을 살펴본바, 이에 따른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미국은 유류의 최종가격 대비 유류세 비중은 휘발유 약 15.1~16.2%, Automotive Diesel은 14.7%를 차지하고 있음. 일본은 휘발유는 약 34.1%, Automotive Diesel은 23.1%~26.9%를 차지하고 있음.
  - 반면, 영국은 휘발유 약 59.6%, Automotive Diesel은 55.6%를 차지하며, 독일은 휘

발유 약 59.9%, Automotive Diesel은 39%(비사업용의 경우 48%)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휘발유의 OECD 유류세 평균이 약 48.7%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최종가격 대비 유류세 비중은 휘발유 약 46.2%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Automotive Diesel의 경우 OECD 유류세 평균은 약 40.0%이며 우리나라는 유류세 비중이 47.7%를 차지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유(Light Fuel Oil)의 유류세 비중은 일본, 미국, 캐나다, 스위스, 룩셈부르크에 이어 16.7%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휘발유와 경유(디젤)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적용하고 이외는 개별소비세를 유류에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주요국은 대부분 유류에 대해 개별소비세로 과세하고 있어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임.

□ 주요국의 유류세 제도를 살펴본 결과, 또 다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유류세에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임.

- 독일의 경우 기후변화 완화와 에너지 공급 안정을 위해 유류에 최소한의 친환경연료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노르웨이의 유류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이산화탄소세, 유황세는 일종의 환경세이며 영국의 기후변화세도 환경세임. 스웨덴은 환경기준 분류에 따라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음.
- 이외에 이탈리아, 덴마크, 스위스, 캐나다, 네덜란드 등은 환경 개선, 에너지 개발과 같은 친환경 조세정책을 펴고 있음.

□ 주요 국가들은 보통 환경을 고려하여 조세를 통하여 유류가격에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려 하고 있음. 이는 주로 이산화탄소세, 유황세, 에너지세의 형태로 부과되고 있음. 특히 기후변화협약 이후 탄소세 부과를 포함한 여러 방법을 통해 지구 온난화의 주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국제적 움직임에 주목해야 함.

## 참고문헌

이만우, 「우리나라 에너지 조세체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세무와 회계저널』 제8권 제3호, 한국세무학회, 2007

기획재정부, 내부자료.

한국석유공사, 내부자료.

Energy Prices & Taxes 2nd Quater, 2008, IEA

Energy Prices & Taxes, 3rd Quater 2008, IEA

Energy Policies Review the EUROPEAN UNION, 2008, OECD

Energy Data File, New Zealand, 2008. 6

Excise and energy rates Netherlands, 2007. 6

IRS Publication 510, Exercise Taxes for 2008, IRS

Statistics Denmark and the Danish Ministry of Finance, 2008. 8

Taxation of energy in Sweden, Ministry of Finance Sweden, 2008

<http://www.fhwa.dot.gov/>

<http://www.taxadmin.org/>

<http://www.chinatax.gov.cn/>

<http://www.skm.dk/>

<http://www.hmrc.gov.uk/>

<http://www.cra-arc.gc.ca/>

<http://www.sbr.gov.bc.ca/>

<http://www.ird.govt.nz/>

<http://www.skatteverket.se/>

<http://www.nora.ie/>

<http://www.dcenr.gov.ie/>

<http://www.sei.ie>

<http://www.minfin.nl/>

<http://www.magyarország.hu/>

<http://www.khem.gov.hu>

<http://www.finance.gov.sk/>

세법연구 08-09

## 주요국의 유류세 제도 및 세율 비교 분석

---

2008년 12월 22일 인쇄

2008년 12월 29일 발행

저 자 조명환 · 조진권 · 정경화

발행인 원 윤 희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TEL: 2186-2114(대) [www.kipf.re.kr](http://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고려문화사

© 한국조세연구원 2008

ISBN 978-89-8191-424-0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